

2005年 8月

碩士學位論文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所得稅에
關한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會計學科

王 瑩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所得稅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Income Tax on the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

2005年 8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會計學科

王 瑩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所得稅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金 基 平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06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會計學科

王 瑩

王 瑩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_____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_____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_____ 印

2005年 06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目 次

Abstract

제1장 序 論	1
제1절 研究의 目的	1
제2절 研究方法 및 範圍	3
제2장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概念과 種類	4
제1절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概念	4
제2절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種類	5
제3절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所有와 經營	22
제4절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會計制度	23
제3장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所得稅制	27
제1절 中國 經濟現況 및 租稅環境의 變化	27
제2절 中國 租稅制度의 概要	45
제3절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所得稅制	58
제4절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租稅優待制度	66

제4장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租稅上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68
제1절	增值稅의 部分的인 還給問題와 解決方案	68
제2절	各種 準租稅의 問題와 解決方案	80
제3절	移轉價格稅制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93
제5장	要約 및 結論	99
參 考 文 獻	105

表 目 次

<표 1-1>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比較	21
<표 3-1> 中國, 지난 20年間 世界 最高 成長率 示現	27
<표 3-2> 中國經濟의 位相 變化(2002年 基準)	28
<표 3-3> 中國의 輸出入 伸張率	29
<표 3-4> 中國의 最近 經濟動向	30
<표 3-5>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留置 現況	31
<표 3-6> 中國 國務院 發展研究中心의 CGE 模型 利用 未來 20年 豫測	33
<표 3-7> 韓國의 對中國交易 推移	34
<표 3-8> 對中國 10대 輸出 品目	34
<표 3-9>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現況(中國側 統計 基準)	36
<표 3-10> 中國의 現行 租稅制度의 概要	50

圖 目 次

<그림 3-1> 中國의 現行 各級 世務器具 組織圖	55
<그림 3-2> 納稅義務者 및 課稅所得의 範圍	58
<그림 4-1> 價格, 收費 및 租稅의 性質 및 그 相關關係	81

ABSTRACT

A Study on The Income Tax on the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

by Wang, Ying

Advisor : Prof. Kim, Ki-Pyung, Ph. D.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China economy realized the best economic growth rate in the world during past 20 years. Status that occupy in international economy essence GDP ranks the 6th, volume of trade does 5th export and income did 6th, FDI recorded 1st in the world, so contribution in international economy growth becomes important gradually. Judge that hold potential energy that can keep high growth such as now continuously.

The such China leaped into to the 3 trade target nations of the Korea in relation with the Korea, It became the 1st among trade target department pass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first half of 2003. Also, Investment for the China rose hastily to Korea's maximum investment target in fast increased trend. The Korea is expected that maintain for fair period investment for the China taking into account China market's potential energy, geographical closeness, similar cultural background, economy development phase, difference of natural resources and complementary economic relations etc.

Thus, according as advance rapidly relation of China and Korea, China market becomes important gradually. but It is becoming bottleneck in public

investment enterprise because information that is systematized for Chinese tax systems is less. As important external environment of enterprise activity, tax systems in spite of weight in real that direct investment for Korean enterprise's China is increasing. Therefore, here analyzed Chinese tax systems and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income systems of taxation to use connected a data, and difficulty of tax systems that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 suffers studied solving method.

Result of studies are as following.

First, need comprehension about role and sight of tax policy been propelling in Chinese circumstances. Tax systems that one of policy instrumentation for successful building of socialism market economic structure were reflected and considered.

Second, must recognize exactly for direction of tax reforms of hereafter in our enterprise's situation and ready the effective disposal plan.

Third, must be interested in a tax preferential policy. Recently, should keep in mind that convert and is propelling by a industrial preferential policy such as IT, a life science, a hightech industry, a infra facilities field.

Fourth, should keep in mind in change of Value Added Tax's part carry-back provisions.

Fifth, judge that a Chinese natural, a socioeconomic situation, governmental various actions about cost-benefit that is origination of cost-benefit problem and realization in present stage about it synthetically, and it must be provision from the investment phase zero.

Sixth, Public investment enterprise -Specially, advance enterprise which deal with internal enterprise- will have to consider that can become target of transfer price taxations, and be interested about transfer price tax systems.

제1장 序 論

제1절 研究의 目的

역사적으로 보면 오래 전부터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상호영향을 미쳐 왔으며,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국 간 상호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중국이 한국과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면서 역사상 끊임없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 기업의 강점인 동시에 한국 조상들이 중국과 맺어 왔던 관계를 새삼 되새기게 한다.

앞으로 국제경제의 통합화현상이 뚜렷해지고 경제와 사회구조의 변동이 매우 급격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경제는 국내·외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시장에 대하여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공통된 사실은 엄청난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는 초대형시장이라는 점과 향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은 중국의 제도와 환경에 대한 점이다.

세계경제의 개방화 추세로 국경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도 시장경제의 우월함을 인정하고 해외자본 유치 및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거대한 대륙의 성장 잠재력, 해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세계무역기구 가입 및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세계 최대의 해외자본 유치국 자리를 넘보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기업 중 절반 가까이는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투자에 대한 양적인 성장 속에서도 많은 중국진출기업이 중국의 투자환경과 조세제도에 대한 자료 부족 등으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중국이 세

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투자환경과 조세제도는 여전히 어렵고 생소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10여 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교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국 간 교역량은 2000년에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02년에는 396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2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제2위 수출국이자 제3위 수입국이며, 교역 규모 면에서 한국의 제2위 교역 상대국이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5% 정도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3년 상반기에는 홍콩과 중국을 합친 수출 비중이 대미국 수출 비중을 추월하여서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빠른 증가세로 인해 2001년 이후 대중국수출의 기여도가 대미국 수출의 기여도보다 높아지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은 중국의 대외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동조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1990년 이후 본격화된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2002년 말 현재 총 4,008건에 27억 4천만 달러(실행액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건수 및 금액대비 기준으로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중국은 2002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3년 상반기에도 총 해외투자의 37.3%를 차지하면서 한국의 해외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의 주요 교역 및 투자대상국으로 등장했지만, 중국 조세제도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가 많지 않아서 대중 투자기업에 하나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조세제도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할 때 중요한 외부환경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이용한 중국의 조세제도 및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제와 조세우대제도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한국의 대중 투자기업이 겪는 조세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경쟁력이나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한 조그만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현행 외상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

국의 주요 조세제도와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의 소득세제를 고찰하고, 대중 투자기업이 당면한 조세상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미력하나마 이 분야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2절 研究方法 및 範圍

중국의 제도는 WTO가입 후 시시각각으로 매우 다기한 방면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제도가 주로 예규 등 주관행정부문의 해석에 의하여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들은 변화에 대응하여 나가기 위해서 체계적인 고찰과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중국은 세무 및 회계처리 기준이 필연적으로 내부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사항이며 지금까지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정책도 점점 축소 또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홍콩의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을 표준으로 하고 있듯이 앞으로 중국도 국제회계기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주로 기 발간된 각종 연구자료, 전문서적 및 정부의 관련 연구보고서와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였으며, 문헌연구방법에 의하여 중국의 조세제도에 관한 법률, 법규, 조례 및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구성에 대해 기술하였고, 제2장은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회계제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3장은 중국의 조세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의 경제 및 조세환경의 변화를 살펴 현행 중국의 조세제도에 대하여 개괄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소득세제와 조세우대제도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제4장은 중국 외상투자기업들이 당면한 소득세제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5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점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概念과 種類

제1절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概念

오늘날 기업(특히 多國籍企業)은 企業利潤을 極大化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자본을 투자한다. 따라서 자본이나 技術條件이 열악한 국가는 多國籍企業에 대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리한 投資環境을 조성하여 주고 자국에 자본을 투자할 것을 유도한다. 外國資本의 유치는 資本招請國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국의 투자 자금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先進生産技術과 경영방법을 배울 수 있는 一舉兩得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자본을 투자하는 多國籍企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본초청국이 제공하는 유리한 생산 환경으로 인하여 기업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이전이 극히 자유롭게 된 오늘날, 다국적기업의 투자자본은 만약 資本招請國의 投資環境이 악화될 경우 쉽게 投資環境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資本招請國인 開發途上國들은 投資資本의 자유로운 이전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1978년 中國共產黨 제11회 中央委員會 제3차 全體會議에서 개방정책을 채택한 중국도 중국의 産業資本 부족문제와 열악한 기술조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經濟復興을 위하여 문호를 개방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유치는 자국의 경제부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중국은 外資留置의 方法과 節次를 法律로 規定하고, 그 法律이 規定하고 있는 方法과 節次에 따라 外國投資者들이 중국에 자본을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經濟開發政策과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外資留置가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외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外國投資者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중국이 許容하고 있는 투자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투자하였을 때 비로소 投資資本의 元金과 果實을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어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外資를 유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熟知하는 것이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外商投資企業이란 외국인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이다. 즉, 외국투자자가 중국의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아 중국 경내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하며 外商投資企業은 中國의 法律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시에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다.¹⁾ 중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中國의 法律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外商投資企業을 설립하고, 그 기업의 生産經營活動을 통하여 투자의 과실인 이윤을 취득하여야 한다. 外商投資企業을 설립한 외국 投資者가 중국에서의 사업경영을 포기하고 投資元金を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한 外商投資企業을 해산하고 채권과 채무를 청산한 다음 투자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²⁾

제2절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種類

中國政府는 中國經濟改革으로 인한 西歐資本主義의 資本과 技術의 도입을 허용하여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中國資本化의 結合 및 外國企業 單獨投資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外商投資企業은 크게 中外合資經營企業, 中外合作經營企業, 外資企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는 中外合資株式會社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外商投資企業은 外國投資者가 중국의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中國政府의 비준을 받아 中國 境內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하며, 中國의 法律을 준수하여야 하고 중

1) 권태형, 「중국조세와 회계제도」, 도서출판 시그마, 2003., p.142.

2) 鄒昭成, 「稅收擊法基礎知識」,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2., p.190.

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中外合作企業은 중국이 특별히 의도하여 발전되어 온 外國人投資形態가 아니라 合資方式이 갖는 경직성과 확정성 등의 장애요소를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부담하려는 外國投資者들의 中國投資 초기단계의 관행에서 시작되었다. 合作企業은 中國投資者와 外國投資者가 별도로 법인격을 유지하는 조합형태를 띄기도 하고 지분형 合作經營企業도 존재한다.³⁾

1. 中外合資經營企業

中外合資經營企業⁴⁾이란 외국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에 의거하여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아 平等互惠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 내에서 중국의 회사와 기업, 기타 경제조직과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기업을 경영하며 공동으로 손익을 부담하는 企業法人組織을 말한다.⁵⁾ 모든 종류의 外商投資企業은 특정한 기업목적에 달성하고자 하는 중국과 외국투자자의 투자행위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체이므로 투자자들 간의 相互信賴關係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中外合資經營企業은 다른 종류의 외상투자 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에 비하여 投資者間的 인적 관계보다는 투자되는 자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형태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中外合資經營企業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기간 내에는 資本減少를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中外合作經營企業의 경우 외국 투자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투자자본의 先行回收制度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⁶⁾ 또한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투자 목록, 경영기한에 한

3) 권태형, 전게서, p.142.

4) 중외합작경영기업을 또 다른 말로 주식형 합영기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합영기업이 주식회사처럼 출자자의 권리를 주식으로 나누어 구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형 합영기업에 속하는 중외합작경영기업과 대비하여 주식형 합영기업이라고 한다.

5)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資經營企業法, 제1조.

계를 두지 않기 때문에 많은 외국투자자들이 선택하는 기업형태이다.⁷⁾

1) 中外合資經營企業의 特徵

中外合資經營企業은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가진다.

첫째, 中國과 外國投資者의 共同投資로 설립된다. 中外合資經營企業의 설립주체는 外國의 投資者(外國合營者라고도 함)와 中國의 투자자(中國合營者라고도 함)이다. 外國投資者로는 外國의 會社와 企業, 기타 經濟組織이나 個人을 모두 포함하는 概念이므로 外國法人이나 自然人 모두가 中國 내에서 中外合資經營企業 설립주체가 될 수 있다.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이 제정된 1979년 7월 1일 당시 英國領에 속하였던 香港이 1997년 7월 1일부터 中國領이 되었기 때문에 香港의 자본은 1997년 7월 1일부터 中國의 자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香港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당시 中國은 법률 제도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기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香港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 후에도 향후 50년간은 현재의 香港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外商投資企業分野에서의 香港투자자의 법률적인 지위도 주권 회복전과 동일한 법률적인 지위를 가진다. 마카오, 대만 또는 화교의 中國 내 투자에 대하여도, 外國合營者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외국 합영자를 外商 또는 客商이라고 略稱하기도 한다.

中國 투자자(中國合營者)는 中國의 회사와 기업 또는 기타 經濟組織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中國의 회사와 기업 또는 기타 經濟組織이란 中國法律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정부의 비준을 얻어 設立登記를 마쳐 법인자격을 취득한 경제실체를 말한다. 따라서 中國《民法通則》이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조건을 반드시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中國投資者の 資格은 中國의 회사와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만이 가지는 것이

6) 鄒昭成, 「稅收摯法基礎知識」,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2. 5., p.190.

7) 戶進勇, 社寄華, 「國際經濟合作」,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2000., p.79.

므로 중국국적을 가진 자연인은 中國 合營者가 될 수 없다.

둘째, 中外合資經營企業은 중국법률에 따라 중국영토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中外合資經營企業은 중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의 영토 내에서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中外合資經營企業은 중국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국의 기업이다.⁸⁾ 따라서 中外合資經營企業의 국적은 중국이다.

中外合資經營企業은 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 分事務所나 出張所 등과 구별되고, 중국의 영토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회사나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 외국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설립한 合營企業과 구별된다.

셋째, 中外投資者간의 인적관계가 중시된다. 외국자본과 기술유치를 목적으로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外商投資企業은 설립단계에서부터 外國投資者가 투자하려고 하는 자금 및 기술과 관련된 일정한 투자조건에 중점을 두고 있어 투자자간의 인적관계가 매우 중요시되는 기업형태이다. 만약 外國投資者가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자금과 기술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外商投資企業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고 해산된다.

中外合資經營企業의 根據법인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과 그 《實施條例》의 규정 중에는 투자자간의 인적관계를 중시하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다.

① 外國投資者의 출자에는 법률상 아무런 制限이 없어 外國投資자는 현금, 실물, 공업재산권, 特許技術 등을 출자할 수 있으나,⁹⁾ 그 출자의 내용은 中外合資經營企業 설립을 위한 中外投資者간의 설립계약과 기업의 定款 등에 명시되어야 하고, 만약 외국투자자가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기업의 경영이 不可能하게 되었을 때에는 中外合資經營企業은 해산된다.

② 각 투자자는 각자의 투자지분에 해당되는 登記資本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반드시 合營他方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¹⁰⁾ 만약 他方의 동의를 받을 수 없

8)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資經營企業法, 제2조.

9)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資經營企業法, 제5조.

을 때에는 기업을 해산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규정들을 볼 때, 中外合資經營企業은 기업의 설립과 존속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資金 및 技術과 관련된 개인적인 조건들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中外投資者간의 인적관계가 매우 중요시되는 기업형태이다.

넷째, 共同經營, 共同收益, 共同危險負擔의 유한책임회사이다. 中外合資經營企業의 책임형식은 유한책임이다.¹¹⁾ 中外合資經營企業의 출자자는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權利를 가지고 義務를 부담하게 된다. 출자자 各方이 출자한 자본은 중외합자경영기업의 獨立財産으로 되고, 이는 中外合資經營企業의 경영활동과 대외적으로 부담한 債務의 책임근거인 財産이 된다. 출자자 각방은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限度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有限責任의 기업형태이다.

중외합자경영기업은 中外合營者가 공동 관리하는 기업으로서, 합영자 各方은 평등하게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기업의 최고권력 기구로서 董事會를 설립하고, 董事會에 파견할 각방의 董事는 각 합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협의에 의해 확정되며, 董事長(대표이사)에 해당) 또는 副董事長도 합영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董事會의 결의로 선출할 수 있다. 合營企業의 일련의 중요한 사항은 董事會에 출석한 董事들의 일치된 결의를 거쳐 결정된다.¹²⁾ 합영자 각방은 그들이 占有하고 있는 出資의 비율에 따라 손익을 부담하고, 각자 납부한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채무에 대한 責任을 진다.

다섯째, 中外合資經營企業은 株式形 經營企業이다. 中外合資經營企業을 주식형 합영기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合營企業이 주식회사처럼 출자자의 권리를 주식으로 나누어 構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定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契約式 經營企業에 속하는 中外合作經營企業과 對比하여 株式形 經營企業이라고 한다. 合營企業은 일반적으로 合營者의 출자를 주식으로 나누어 구성하지 않고 일정한 比率로

10)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資經營企業法, 제4조.

11)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資經營企業法, 제4조.

12)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資經營企業法, 제6조.

구분하며, 위 비율에 따라 合營企業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출자자들이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기업의 組織機構의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中外合作經營기업과 달리 中外合資經營企業의 組織機構은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고 當事者가 계약에 의하여 이를 變更할 수 없다. 이처럼 中外合作經營企業은 기업의 중요사항이 합작자간의 契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契約式 合營企業이라고 함에 반하여, 中外合資經營企業은 기업의 重要事項이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고 합영자들의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契約式 經營企業인 中外合作經營企業과 대비하여 株式形 經營企業이라 한다.

여섯째, 合資企業의 합자기간은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약정한다.¹³⁾ 合資企業의 合營期限은 업종에 따라 규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合資企業의 형태 중 국가가 장려하거나 투자 항목에 허락되어 있는 경우도 合營期限을 규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국가가 제한을 두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合營契約 중 合營期限을 언급하며 만기 6개월 전에 심사기간을 통해 연기 신청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 기업을 청산한다.

2) 法律的 特徵

中國의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은 合資經營企業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有限責任公司라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법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설립된 合資經營企業은 중국법률에 의하여 法人資格을 취득하게 되는 기업법인이다.

그러나 中外合資經營企業은 합영자 각방간의 信賴關係가 매우 중시되는 기업법인이기 때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거법인 中外合資經營企業法과 그 實施條例에는 합영자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중시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13)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資經營企業法, 제13조.

2. 中外合作經營企業

中外合作經營企業¹⁴⁾은 외국의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외국 합작자)이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중국 합작자)과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에 의거하여 中國의 영내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계약규정에 따라 쌍방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결정되는 기업형식을 말한다.¹⁵⁾ 출자비율에 따라 기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손익에 대한 책임을 지는 中外合資經營企業과는 달리 中外合作經營企業을 설립하려고 하는 출자자들은 합작기업설립계약에서 투자 또는 합작조건, 수익 또는 제품의 分配, 위험과 손실의 分擔, 경영관리의 방식과 합작기업 종료 시의 재산의 歸屬關係 등 기업의 제반 중요사항을 약정하여야 하고, 合作者간의 위 약정에 따라 기업의 중요사항이 결정되는 기업형태이다.

위와 같은 특징에 의하여 中外合作經營企業을 契約式 合營企業이라고 한다. 契約式 合營企業인 中外合作經營企業은 출자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모든 중요사항을 비교적 자유스럽게 결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中外合作經營企業은 中外合資經營企業에 비하여 機敏性和 融通性을 가진다. 따라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外商投資企業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中外合作經營企業의 형태를 취함이 中外合資經營企業의 형태를 취하는 것에 비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하다 할 것이다.

합작회사 설립 주체는 외국합작자의 경우 合資會社와 같다. 合作者는 중국의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만이 가능하며 중국의 자연인은 合作者가 될 수 없다. 합작기업은 일반적으로 외국합작자가 전부 혹은 대부분의 자금을 출자한다. 중국 측은 토지나 공장 그 외에 이용 가능한 설비 설치를 제공하며, 때로 중국 측 또한 일정의 자금을 출자한다. 外商投資企業의 중외출자자들간의 출자비율은 기업의 경영에

14)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출자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모든 중요한 사항-투자나 합작조건, 수익 또는 제품의 분배, 위험과 손실의 분담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계약식 합영기업이라고 한다.

15)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作經營企業法, 제1조.

관한 지배권 및 출자자들의 이윤분배비율 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외자의 비율은 49%를 넘을 수 없고, 본국의 자본이 응당 51%를 넘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그것이다. 자국의 부족한 사업자금의 보완이라는 점은 외자유치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외국출자자의 출자비율이 지나치게 적은 외국출자자는 외자이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경영성과에 대한 관심이 적어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설비를 제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합자회사가 등기자본의 25%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합작기업은 외자비율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다. 중외출자자들은 합작계약에서 출자비율을 자유롭게 결정하는데 이는 합자기업이 契約式 合營企業이라는 기업의 특성에서 기인된 것이다. 다만 법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합작기업일 경우 법인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비해 규모가 크고, 제 3자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외자비율은 등기 자본의 25% 이상이어야 한다.¹⁶⁾

합영 각방이 자본 출자를 약정한 후에 계약한 합작 만기 시에는 전체 재산이 중국 합작자에게 귀속된다. 외국합작자는 합작기간 내에 우선적으로 투자분을 회수할 수 있다.¹⁷⁾ 따라서 합자기업 설립 계약에서 투자 또는 합작조건, 수익 또는 제품의 분배, 위험과 손실의 분담을 약정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종료시의 재산과 귀속관계 또한 합작기업 설립 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1) 中外合作經營企業의 特徵

中外合作經營企業의 특징을 中外合資經營企業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中外合資經營企業과 같은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자격을 보면, 합작기업의 外國合作者는 외국의 회사와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자연인 모두가 될 수 있으나, 中國合作者는 중국의 企業이나 기타 經濟組織만이 될 수 있고, 중국의 自然人은 合作者가 될 수 없다.

16) 中外合作經營企業法 實施條例, 제18조.

17) 戶進勇, 「WTO與中國利用外資和海外投資」,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2001., p.21.

둘째, 중국법률에 의거하여 중국영토 내에서 設立한다. 中外合作經營企業도 中外合資經營企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중국의 영토 내에 설립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은 中國法律의 규율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중외 합작자 쌍방의 共同投資, 共同經營, 共同損益負擔으로 기업을 경영한다. 中外合作經營企業이 비록 法人格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은 여전히 일종이 기업조직형식을 갖춘 經濟實體이기 때문에 법인격을 갖춘 中外合作經營企業과 마찬가지로 공동출자, 공동경영, 공동손익부담을 하게 되나, 다만 投資方式, 經營方式, 그리고 위험과 손익부담의 比率을 출자자의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中外合資經營企業과 다르다.

다음으로 中外合資經營企業과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으로 투자나 合作條件을 결정된다. 契約式 合營企業인 中外合作經營企業에서는 합작자간의 합작조건이나 투자조건을 합작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투자나 합작조건은 現金이나 實物投資는 물론 土地使用權, 工業財產權, 特許技術 등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떠한 재산도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출자가 가능하다.

다만 합작자의 투자비율에 관한 制限規定이 있는바, 법인자격을 취득한 中外合作經營企業의 외국인 출자자는 일반적으로 합작기업 登記資本의 25%보다 적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법인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中外合作經營企業의 합작 각방이 투자나 합작조건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심사비준기관인 對外貿易經濟合作部에 위임하여 대외무역경제 합작부가 실정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기업의 성질에 따라 서로 다른 관리방식을 취한다. 中外合作經營企業은 法人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非法人으로 구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격의 유무에 따른 기업의 관리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법인격을 갖춘 中外合作經營企業은 中外合資經營企業과 그 조직관리기구가 비슷하다. 즉 合作經營企業은 最高權力機構로서 董事會를 설치하여야 하고, 합작기업의 契約이나 定款에 의거하여 기업의 중

요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董事會의 구성은 합작쌍방의 투자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중외합작자의 일방이 동사장(董事長)을 맡을 경우 타방은 부동사장(副董事長)을 맡게 되고, 董事會의 인원수나 직능 및 의사규칙 등은 합작기업의 계약이나 정관에 의하여 결정된다.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합작기업은 기업의 관리기구로 聯合管理委員會를 설치하여 합작계약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聯合管理委員會의 主任을 합작자의 일방에서 맡으면 타방은 副主任을 맡게 되며, 聯合管理委員會의 인원수나 직능 및 의사규칙은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의 董事會나 聯合管理委員會는 總經理를 임명하거나 초빙하여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總經理는 이사회나 聯合管理委員會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점은 中外合資經營企業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中外合作經營企業은 합작자 쌍방의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합작자 쌍방이 기업을 공동관리하거나 합작자 일방에게 기업의 경영관리를 위탁하거나 또는 합작자 이외의 제3자에게 기업의 경영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반드시 董事會나 聯合管理委員會의 董事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심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얻은 후 工商行政管理機關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셋째, 契約으로 損益의 分配와 投資資本의 回收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中外合資經營企業과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기업경영활동에 따른 위험과 손익의 분담에 있어 中外合資經營企業은 합영 쌍방의 출자비율에 따라 위험과 손익을 분담하나, 中外合作經營企業에서는 기업설립 당시 체결한 합작자간의 企業設立契約에서 약정되어 있는 분담비율에 따라 위험과 손익을 분담하여야 한다.

기업의 경영기간 내에 출자자의 일방이 기업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 중외합작경영기업의 합영자는 그 소유 지분을 타에 양도하고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合營他方の 同意를 받지 않으면 그 소유 지분을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을 해산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외합작경

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설립계약에서 외국 합작자는 그 투자자본을 기업의 經營期間이 만료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投資資本을 회수하고 기업의 경영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中外合作經營企業의 法律的 特徵

中外合作經營企業은 다음과 같은 法律的 特徵을 가진다.

첫째, 契約式 合營企業이다. 中外合作經營企業은 中外合資經營企業과 대비하여 볼 때 기업의 설립, 조직기구와 경영관리, 해산과 청산 등의 모든 방면에서 법률적인 규제를 적게 받아 현실적응력이 매우 높은 기업형식이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의 경우 기업은 設立과 동시에 法人格을 가지고 기업의 조직기구와 經營管理의 方法 등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方法에 따라야 하는 등 법률적 규제가 강할 뿐만 아니라 출자자의 기업에 대한 각종 權利와 義務도 출자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中外合資經營企業을 株式形 合營企業이라고 함에 반하여, 출자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대부분의 중요사항이 결정되는 中外合作經營企業은 契約式 合營企業이라 한다.

따라서 中外合作經營企業의 合作者 雙方의 권리의무관계, 즉 투자와 합작조건, 수익 또는 상품의 분배, 위험과 손익의 분담, 경영관리의 방식 및 합자기업 종료 시 재산의 귀속관계 등의 사항은 모두 合作者 雙方이 締結하는 契約의 內容에 의하여 決定된다.

둘째, 法人格의 取得도 출자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中外合資經營企業은 기업이 설립됨과 동시에 법인격을 가진다. 그러나 中外合作經營企業은 출자자 雙方의 意思에 의하여 법인자격을 가질 수도 있고 법인자격을 가지지 않은 기업으로 설립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의 출자자들은 設立 당시의 상황에 따라 법인격 취득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設立段階에서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중외합작경영기업에 비하여 고도의 機敏性과 現實適應力을 가지게 된다. 법인자격을 갖추는 기업일 경우 유한책임공사의 기업형태를 취함으로써 조직형태는 합자

회사와 같다.¹⁸⁾

셋째, 기업의 責任形式도 출자자의 自由意思로 결정할 수 있다. 법인격을 취득한 中外合作經營企業의 책임형식은 원칙적으로 有限責任임으로 기업의 출자자는 자신의 出資範圍內에서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기업의 설립계약에 출자자의 책임범위에 관한 別途의 約定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각 출자자는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출자자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출자자의 책임형식을 比較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中外合作經營企業은 그 法律實體가 없다. 따라서 합작자 각방의 출자분은 合作契約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합작자의 共有 또는 各自의 單獨 소유에 속하게 된다.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합작기업은 합작자 各方의 대표로 구성되는 聯合管理機構에 의하여 경영 관리되나, 위 연합관리기구는 합작기업의 法定代表가 되지는 못하고, 단지 의사협의기구에 불과하다. 합작기업은 합자회사처럼 업무집행기구로 총경리를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된다. 연합관리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분배비율은 중외합작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이 적은 출자자에게 많은 수의 인원이 분배되기도 한다. 다만 연합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¹⁹⁾ 연합관리위원회는 주임과 부주임을 두고 선출사항은 합작기업의 정관기재 사항임으로 정관에 규정된 선출방법에 따라 선출한다.²⁰⁾ 합작기업처럼 일방이 주임을 맡은 시 타방이 부주임을 맞는다. 그 외 기타 연합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이와 같은 중외합작경영기업은 법리상 일종의 同業關係에 불과하여 합작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동업에 관한 법리의 지배를 받게 된다. 즉, 합작자 각방은 그들이 납부한 출자나 提供한 합작조건에 근거하여, 합작계약 중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비율을 정할 수 있지만, 합작기업의 對外債務에 대하여는 連帶責任을 부담하며, 一方이 그 채무를 전부 辦濟한 때에는 他

18) 이만수, 「중국에서의 기업경영」, 창림출판사, 2000., p.127.

19)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作經營企業法, 제25조.

20)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作經營企業法, 제13조 6항.

方에 대하여 求償權을 가진다.

위 두 가지 형식의 합작기업 외에 英美法에서 채택하고 있는 有限同業형식의 中外合作경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작계약에는, 합작자중 최소 1명의 합작자는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無限責任을 부담하고,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합작자가 기업의 경영관리의 주된 책임을 부담하며, 對外的으로 기업을 대표하게 되고, 기타 합작자는 합작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그가 출자한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約定이 있어야 한다.

넷째, 법인격을 갖춘 중외합작경영기업은 中國企業이다. 법인격을 갖춘 中外合作經營企業은 중국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한 기업이므로 그 기업의 國籍은 중국이다. 따라서 중국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3. 外資企業

앞에서 설명한 中外合資經營企業이나 中外合作經營企業은 중국자본과 외국자본의 合資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이다. 그러나 外國資本家가 중국 자본과의 합자를 원하지 않을 때 또 다른 외자유치의 방법을 設定해 두지 않으면 그러한 외국자본의 유치가 어렵게 된다. 이에 중국은 외국의 자본만으로 중국 내에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중국과의 합자를 원하지 않는 외국자본도 유치하고 있다.

外資企業이란 「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²¹⁾에 의거하여 중국 국경 내에서 설립한 전체 자본을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이다.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 국경 내에 설치한 지사는 포함하지 않는다.²²⁾ 독자기업은 중국 내에 설립된 기업이고 법인격을 구비한 중국국적의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 설립된 외국기업의 중국 내 지사 등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외자기업을 독자기업(獨資企業)이라

21) 「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은 1986년 4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를 통해 통과되었으며, 2000년 10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를 통해 수정 통과되었다.

22) 中華人民共和國 外資企業法, 제2조.

고도 한다.

독자기업의 설립주체는 회사나 혹은 기타경제조직 및 개인으로 일반적인 자연인도 설립주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독자기업은 합자, 합작기업과는 달리 외국투자자의 자본만으로 설립되는 기업임으로 기업이 법인자격 취득 여부 혹은 기업의 조직구조 형태는 투자자인 외국인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기업이 중국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법인격 취득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때에는 중국 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²³⁾

독자기업이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중국 「회사법」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민법상 개인의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일반 법률원리에 의해 규율될 수밖에 없다.²⁴⁾ 중국이 독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는 주된 이유는 독자기업의 기업경영에 따른 책임을 기업의 출자자가 개인에게까지 확대시킨다면 외자유치를 위하여 독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는 정책에 반감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자격을 가지는 독자기업의 기업경영에 따른 책임 형식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유한책임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²⁵⁾ 외자 기업은 설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기타기업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외국 투자자의 출자 합자·합작 기업과 동일하며 단지 외국 투자자가 모두 귀속된다는 것이다.

1) 外資企業의 特徵

外資企業은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가진다

첫째, 外資企業은 中國法律에 의거하여 중국영토 내에 설립된 기업이다. 이 특징에 의하여 外資企業은 外國企業과 구별된다. 외국기업이란 외국에서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후 招請國인 中國의 허가를 얻어 중국 내에서 경영활동에 종

23) 독자기업이 중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자신의 명칭과 조직기구 및 일정한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경영에 필요한 독립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기업경영활동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은 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24) 甘培充, 「企業法新論」, 北京大學出版社, 2000., p.242.

25) 外資企業法 實施條例, 제19조.

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기업은 外國國籍을 가지고 그 외국의 屬人管轄에 속하며, 招請國인 중국은 다만 屬地管轄權을 가질 뿐이다.

外資企業이 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자신의 명칭과 조직기구 및 일정한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경영에 필요한 獨立된 財産을 소유하고 있어 기업경영활동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외자기업은 중국법률에 따른 法人資格을 취득한다. 법인격을 취득한 외자기업은 民事法과 外資企業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외에 公司法의 적용도 받게 된다.

外資企業이 위 법인성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격을 가지지 못한 외자기업도 중국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바, 이 때 외자기업은 법인과 유사한 경영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경영하거나, 그러한 경영관리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채 기업을 경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외자기업의 경영활동에는 公司法(會社法)의 法理가 적용될 수 없고, 民法上 개인의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일반 법률원리에 의하여 규율될 수밖에 없다.

둘째, 법인자격을 취득한 外資企業은 중국법인이다. 外資企業이 중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였을 때 그 외자기업의 국적은 중국이 된다. 따라서 중국법의 관할과 보호를 받게 되고, 외자기업과 중국의 기타 기업이나 경제조직간의 법률관계는 중국의 국내 법률관계가 되므로 涉外契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외자기업이 외국의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과 法律行爲를 하였을 때 그 법률행위는 涉外契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외자기업은 중국법인이기 때문에 중국은 외자기업에 대하여 地域管轄權을 가질 뿐만 아니라, 國籍管轄權도 가진다.

셋째, 외자기업의 출자자본은 전액 외국투자자가 出資한 것이어야 한다. 이 특징에 의하여 外資企業은 중국자본과의 합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中外合資經營企業이나 中外合作經營企業과 구별된다. 외국투자자에는 외국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자연인, 個人을 모두 포함한다. 홍콩, 마카오, 臺灣同胞와 海外華僑들은 중

국민이지만 이들이 중국에 투자하였을 때 중국정부는 이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각종특혜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중국영토 내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의 資本全部가 그들의 소유일 때 이들이 설립한 기업도 外資企業에 속한다.

넷째, 외자기업도 하나의 독립한 경제실체이다. 外資企業도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독립된 財産을 소유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따른 책임을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하나의 經濟實體이다. 따라서 독립한 경제실체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외국기업의 지점이나 지사와 區別된다.

다섯째, 외자기업은 원칙적으로 有限責任을 진다. 중국이 외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는 주된 이유가 외자유치에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만약 외자기업의 기업경영에 따른 責任을 企業의 출자자 개인에게까지 확대시킨다면 외자유치를 위하여 외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는 政策效果가 반감된다. 이에 법인자격을 가지는 외자기업의 기업경영에 따른 책임형식에 관하여 기업의 資本金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유한책임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외자기업의 설립자가 無限責任形式의 외자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외자기업의 설립을 비준하는 審査批准機關의 비준을 받아 유한책임이 아닌 무한책임 등의 다른 책임형식의 외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외자기업은 기업의 설립자인 출자자가 1인일 때에는 私人의 法律行爲에 관한 일반 民事法原理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고, 출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組合 등의 일반 민사법원리에 의하여 규율된다 할 것이다.²⁶⁾

4.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비교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을 크게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26) www.nftz.gov.cn/web/download/wsdz.doc

<표 1-1>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比較²⁷⁾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근거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실시세칙	외자기업법 및 실시세칙
조직형태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연합경영체	유한책임회사
경영권 및 이익배분	출자비율에 따라 결정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	투자의사에 의해 결정(독점)
법인세기준	동 일		
최고의사 결정조직	이사회	-이사회 -연합관리위원회 -경영관리수탁자	투자자
자본감자	원칙상불가, 허가기관의 허가받아 감자가 가능	원칙상불가, 허가기관의 허가받아 감자가 가능	원칙상불가, 허가기관의 허가받아 감자가 가능
외국투자자 최저지분율	등록자본금의 25%	등록자본금의 25%	등록자본금의 100%
청산 후 자산처리	청산 후 잉여자산지분율에 따라 배분	계약내용에 따라 배분 (일반적으로 외국투자자가 투자자본을 조기에 회수하고 투자기간 만료시 고정자산부분을 중국측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가 많음)	청산 후 잉여자산 독점소유
장 점	현지업무처리 원활, 현지화에 성공 가능성 높음		경영, 인사권독자 보유로 파트너와의 불화방지, 국내모기업과의 업무협조 원활화
단 점	파트너와의 분쟁소지 높음, 모기업과의 업무협조 애로		현지문제 발생시 직접해결 부담, 초기 내수시장 진출시 다소 불리

27) 권태형, 전계서, p.144.

제3절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所有와 經營

기업이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도록 하고 기업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이나 위험도 기업 스스로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자주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중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계획 경제의 틀 속에서 운영되고 중국 정부는 모든 경제조직이 국가가 수립한 종합적인 경제계획의 틀 속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 틀을 벗어나서는 경제조직체로서 존재할 수도 없다. 중국의 이러한 방침은 개방정책을 채택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획 경제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중국경제 최대의 모순점이기 때문에 계획경제의 수정 또는 폐지가 절실한 것이 오늘날 중국 경제의 현실이다.

外商投資企業에 출자하는 외국출자자들은 자유경쟁체제 아래서 기업경영을 위해 중국에 진출한 자들이다.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고자 함은 외국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경영에 관한 선진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과 달리 外商投資企業에 대하여 「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 제7조, 「中外合作經營企業法」 제11조, 「外資企業法」 제 11조에 따라 최대의 기업경영에 관한 자주권을 주고 있다.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소유제가 인정된 것은 1997년 9월에 열린 제5차 당 대회에서이다. 강택민 총서기는 <보고>를 통해서 공유제를 주체로 한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을 중국사회의 초급단계의 하나로 기본 경제제도의 차원으로 승격시켰다. 그로 인해 사영경제나 외자경제와 같은 비공유제 경제를 중국 사회주의의 중요한 구성성분으로 자리매김 했다. 또한 비공유제 경제를 인정함으로써 주식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주식제는 현대기업의 일종의 자본조직 형식이다. 이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에 유리하고 기업과 자본의 운영효율을 제고시키는데 유리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식통제권이 누구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강택민 총서기는 <보고>이후 중국 기업 중 외자와의 합작으로 251개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외상투자기

업은 외국인의 최저지분율이 25% 이상을 넘어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기업의 형태가 소규모인 유한회사이다. 대부분 外商投資企業이 절대적인 기업 소유권은 중국 합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외국합영자가 투자분을 미리 회수할 시에 기업의 소유권은 여전히 중국합영자에게 모두 귀속된다. 소유권이 중국 측에 귀속되어 기업의 중요 사항을 이들에 의해 결정된다. 경영은 소유권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외국 합영자에게 맡기어지는 모순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기업의 최대이윤 창출을 위해 효율적인 경영방안을 모색하고 경영자의 순수 의지에 의해 기업이 경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外商投資企業은 중국 합영자의 지분율, 즉 기업 소유권에 의해 자유로운 기업 경영이 불가능하다. 外商投資企業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현 중국의 外商投資企業의 발전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모순은 外商投資企業은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다.²⁸⁾

제4절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會計制度

企業會計制度는 중국재정부가 2000년 12월 29일 재회 [2000] 25호로 공표한 회계규범으로서 2001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만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 전에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이 적용하였던 會計制度는 廢止되었다. 그러다가 2001년 11월 29일 재회 [2001] 62호로서 모든 外商投資企業도 2002년 1월 1일부터 이 기업회계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 이전에 外商投資企業이 적용하여 오던 1992년 6월 24일 공표한 中華人民共和國 外商投資企業會計制度는 폐지됨으로서 外商投資企業이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회계규범이 되었다.²⁹⁾ 재정부가 이 제도를 공표하면서 첨부한 문건은 ① 기업회계제도, ② 기업회계제도-회계과목 및 재무제표이다.

28) 이은주, “중국의상투자기업의 주식제 전환에 관한 연구”, (경제학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02), pp.26-27.

29) 고권석, 「중국회계해설」, 조세신보사, 2004., pp.47-49.

1. 企業會計制度

기업회계제도는 본문으로서 14장 160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회계법, 보고조례, 기업회계준칙과 상충되지 아니하면서 아주 체계적이고도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다. 기업회계준칙 중 구체준칙이 각 항목별로 별개로 공표됨으로서 그 체계성을 결하고 있음에 비하여 기업회계제도는 <기업회계준칙-구체준칙>의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그 체계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목록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자산, 제3장 부채, 제4장 자본, 제5장 수익, 제6장 원가 및 비용, 제7장 이익 및 이익배분, 제8장 비화폐성 거래, 제9장 외화환산, 제10장 회계조정, 제11장 우발상황, 제12장 특수관계자거래, 제13장 재무보고, 제14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企業會計制度-會計科目 및 財務諸表

이는 장부를 기록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하고 전산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계정과목에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통일적으로 기장 및 재무제표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없는 계정과목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증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①총설명, ②회계과목 명칭 및 코드번호, ③회계과목 사용설명, ④재무제표 양식, ⑤재무제표 작성 해설, ⑥재무제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상투자기업이 구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가 신규정을 적용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³⁰⁾

1) 외상투자기업이 기업회계제도를 새로이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이는 소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서 다음의 사항은 소급법으로 수정하고, 기타는 전진법

30) 고권석, 전게서, pp.458-460.

을 적용하여 수정한다.

(1) 기업회계제도에 의한 단기투자자의 감액손실 및 장기투자, 고정자산, 무형자산, 건설중인 자산, 위탁대관(위탁대관)의 감액손실,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감액손실은 그 차액을 소급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2) 기업회계제도 시행일 전에 발생하여 시행일 이후까지 가지고 있는 투자자산은 기업회계제도 시행일부터 기업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즉 기업회계제도 시행일 이전에 인식한 투자 및 투자수익은 소급법을 적용하여 조정하지 않는다. 그 후의 투자수익의 인식 및 투자자산의 장부가액 조정은 기업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외상투자기업이 기업회계제도를 새로이 신규로 적용하였을 경우에 아직 상각하지 않은 창업비 및 개업기간의 외화손실잔액이 비교적 커서 직접 잔액을 당기손익에 계상함으로써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소급법을 적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 미상각한 창업비 및 개업준비기간의 외화손실잔액이 비교적 적을 경우에는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2) 외상투자기업이 기업회계제도를 신규로 적용하면서 발생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有價證券의 잔액은 短期投資계정으로 대체한다.

(2) 預付貨款의 잔액과 預收貨款의 잔액은 각각 預付帳款과 預收帳款계정으로 대체한다.

(3) 存貨變現損失準備계정은 存貨跌價準備계정으로 대체한다.

(4) 籌建期間匯兌損失의 대변 잔액은 다음과 같이 각각 처리한다.

① 청산 시까지 기다려서 처리하는 것은 長期待攤費用계정으로 대체한다.

② 결손이 있는 법인이 이익이 날때까지 기다려서 처리하는 것은 長期待攤費用으로 대체한다.

③ 기업이 생산경영을 시작한 후 5년 동안에 상각하는 것 중 그 잔액이 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은 소급법으로 처리하고,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직접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5) 其他遞延支出 잔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이후 회계기간의 수익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長期待攤費用으로 대체한다.

② 이후 회계기간의 수익에 대응시킬 수 없는 것은 직접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6) 遞延投資損失 차변잔액은 長期待攤費用으로, 대변잔액은 遞延收益계정으로 대체한다.

(7) 應付公司債, 應付公司債溢價 또는 折價 잔액은 應付債券 계정으로 대체한다.

(8) 應付工資 잔액은 다음과 같이 각각 처리한다.

① 지급해야 될 직원의 급여총액에 속하면 그대로 應付工資 계정으로 놓아 둔다.

② 중국직원의 퇴직양로의 기금, 보험복리비용 및 국가의 각종보조금은 應付福利費 계정으로 대체한다.

(9) 應付福利費 계정은 應付工資 계정에서 대체된 것을 제외하고, 외상투자기업이 세후이윤에서 적립한 직공장려금, 복리기금 및 그 사용액을 처리한다. 나머지의 복리비는 발생한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10) 儲備基金, 企業發展基金, 利潤歸還投資 계정의 잔액은 盈餘公積 계정에 대체한다.

(11) 대차대조표의 預計負債계정 아래 遞延收益 세부항목을 증설하고, 實收資本 계정에 “其中 : 中方投資(非人民幣資本期末余額)과 外方投資(非人民幣資本期末金額)”의 항목을 신설한다.

(12) 외상투자 여행기업은 기업회계제도를 준수하는데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표의 양식은 <外商投資旅遊企業會計科目和會計報表>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3) 소급법을 적용하여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비교 재무제표의 기간 중 회계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각 회계기간의 순이익 및 기타관련 계정을 조정하여 비교 재무제표 전 기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의제한다.

비교 재무제표의 회계기간 전의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액에 대하여는 비교 재무제표 중 전기재무제표의 기초미처분이익잉여금 및 기타 계정을 적절히 조정한다.

제3장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所得稅制

제1절 中國 經濟現況 및 租稅環境의 變化

1. 中國의 經濟現況

1) 中國經濟의 位相

中國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래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본주의적 경제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해서 지난 20년간 세계최고의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1985년에서 1994년까지의 10년 동안 개도국의 평균 성장률은 5.1%, 세계평균은 3.2%임에 비해서 중국은 10.2%의 성장률을 시현했다. 1995년에서 2004년(예상치)까지의 10년 동안 개도국의 평균 성장률은 5.1%, 세계평균은 3.6%임에 비해서 중국은 8.2%의 성장률을 시현해서 최근 20년간 중국은 세계최고의 성장률을 시현했다(<표 3-1> 참조).

<표 3-1> 中國, 지난 20年間 世界 最高 成長率 示現

(단위 : %)

	1985 ~ 1994(10년)	1995 ~ 2004(10년)
중 국	10.2	8.2
개도국 평균	5.1	5.1
세계 평균	3.2	3.6

주 : 2003~2004년은 IMF예상치.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3.

<표 3-2> 中國經濟의 位相 變化(2002年 基準)

	중국의 규모	전세계 비중	전세계 순위	세계성장 기여도
GDP	1조2,500억\$	3.9%	6위	17.5%
PPP기준 GDP	6조700억\$	12.7%	2위	-
수 출	3,256억\$	5.1%	5위	23.8%
수 입	2,952억\$	4.4%	6위	26.3%
FDI(실행기준)	527억\$	8.1%	1위*	16.5%

주 : 수치상으로 룩셈부르크 (1,260억\$)가 FDI유치 1위이지만, 이는 기업구조 조정에 따른 일시적 현상임.

자료 : IMF, WTO, UNCTAD 등의 관련 통계 인용.

최근 2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시현한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2002년 기준으로 보면, GDP가 세계 6위,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기준 GDP³¹⁾는 세계 2위, 수출은 세계 5위, 수입은 세계 6위, 실행기준 FDI는 세계 1위로서 세계경제 성장에의 기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표 3-2> 참조).

중국의 무역액은 1990년의 1,154억 달러에서 2002년 6,20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12년간 5.4배 성장해서 동 기간에 세계무역에서 점하는 중국의 비중은 1.6%에서 4.7%로 급상승하여 점차 중심 교역국가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990년 이후 최근까지의 중국의 무역 신장률은 세계 평균의 약 3배를 시현했다(<표 3-3> 참조).

31) PPP 기준 GDP는 각국의 물가수준의 차이 등 명목소득이 반영하지 못하는 요인들을 조정하여 산정되며, 실제의 소득수준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3> 中國의 輸出入 伸張率

(단위: %)

	1990~2000		2001		2002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중 국	15	16	7	8	22	21
미 국	7	9	-7	-6	-5	-2
일 본	5	5	-16	-8	3	-4
E U	4	4	0	-2	5	3
세계평균	6	6	-4	-4	4	3

주 : 상품 무역만을 고려함.

자료 : WTO. *World Trade Report* 2003.

2) 中國의 經濟現況 및 展望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을 지속하던 중국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 1995년의 경제성장률(실질GDP 성장률)이 10.5%를 기록한 이후 2002년에는 7.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고도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에는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8.0% 늘어난 8조 9,404억 원(RMB)에 달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표 3-4> 참조). 최근의 이러한 경제성장의 가장 큰 견인차는 1998년 하반기 이후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정부지출(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고정자산투자 확대와 내수부양을 유도하는 재정정책을 실시)과 WTO가입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입관세인하와 투자환경 및 경영의 투명성 개선 등으로 인해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외국인 직접투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수출 등에 기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의한 산업생산증가와 우회수출증가에 힘입어 최근의 대외여건의 불안 속에서도 수출경기가 호조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개발과 지역개발을 위한 고정자산투자의 증가³²⁾도 최근 중국의 GDP 성장에 많

32) 2003년 1~9월중 고정자산투자가 30.5% 증가해서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민간 및 집체 투자의 증가로 정부재정에 의한 투자부담은 감소하고 있다.

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공공 투자를 증대하는 등 재정적자 확대를 계속 추진할 경우 중장기적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재정적자 수준이 GDP 대비 2.5%로서 국제수준인 5%이하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재정적자확대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4> 中國의 最近 經濟動向

(단위 : %, 억 달러, 元<RMB>)

항 목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실질GDP 성장률	9.7	8.8	7.8	7.1	8.0	7.3	7.7
물가상승률	6.1	0.8	-2.6	-3.0	0.4	0.7	-0.8
수 출	1,511	1,827	1,838	1,949	2,492	2,662	3,256
수 입	1,388	1,424	1,402	1,658	2,251	2,436	2,952
무역수지	123	403	436	291	241	469	304
환 율	8.32	8.28	8.27	8.28	8.28	8.28	8.28
외환보유고	1,050	1,399	1,450	1,547	1,656	2,122	2,864
FDI(실행기준)	411	452	454	404	407	469	527.4

자료 : 『中國統計年鑒』, 중국정부 발표자료 종합.

외국인 투자 증대와 함께 중국 제조업 분야의 생산 능력이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하여 공급의 과잉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반면 수요 증가세는 도시 실업률 증가와 도시화 진행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생산량 증가보다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이 소비를 유발시키기 위해 가격을 과다하게 인하하는 과정에서 디플레의 압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8년, 1999년 및 2002년에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負)를 기록하였다(<표 3-4> 참조). 반면 생산자 물가는 지난 2001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가격인하 경쟁으로 인한 실질 마진 하락과 더불어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이는 결국 기업의 부실채권문제로 연결되어 중장기적 중국경제 발전에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임금을 통한 글로벌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중국의 수입장벽 완화 및 법제화 등을 통한 투자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서 2002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여서, 실행기준으로 FDI가 527억 달러에 달하였다. 향후에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완만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3-5> 참조).

<표 3-5>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留置 現況

(단위: 건, 억불)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7	누 계
건 수	24,556	21,002	19,799	17,100	22,337	26,139	34,171	22,245	446,441
계약액	732.8	510.0	521.0	412.4	624.0	692.0	827.7	591.7	8,872.3
실행액	417.3	452.6	454.6	404.0	407.0	469.0	527.4	333.5	4,813.3

자료 : 주중한국대사관(<http://koreaemb.org.cn>)

중국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0년에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02년에는 3,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수출의 견인차는 중국 내 투자한 외국인 기업들이며, 이들이 총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으며, 최근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주도한 것도 중국의 저임금을 통한 외국인 기업들의 우회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품목은 총수출 비중에서 43% 이상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계 및 전기 전자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외국인 기업의 중국현지 공장이전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요 우회수출 품목으로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섬유제품과 잡화는 노동 집약적 제품 및 저가 생활용품으로 세계경기의 침체 속에서 오히려 가격경쟁력이 상승하여 수출증가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반면 수입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인데, 1998년 이후 기계 및 전기전자 수출과 동반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이는 중국의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

의 가공무역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지역간, 업종간 소득 불균형으로 사회불안의 우려가 있다. 특히 WTO가입 이후 농업구조조정 과정과 지방의 기업구조조정, 행정기구 개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인구와 농촌지역 인구의 실질소득 감소가 사회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아직 省·市 간 폐쇄경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구조적인 비효율이 존재하고, 省·市 간 교역이 원활하지 못하여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 각 성간 보호주의적 경향이 상존하며, 이로 인한 중복투자 발생 시 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자금의 우회경로가 짧아 재정금융정책의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WTO가입 이후 시장개방으로 경제력이 없는 기업의 도산과 이로 인한 금융부실화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문제점은 부실채권 중 선별적 출자전환이 이루어지고 부실채권처리 전담회사를 만들어 부실채권을 정리 중에 있기는 하지만, 사업성이 없는 자산들에 대한 조기정리가 곤란한 상황이며, 기업 간에 복잡하게 얽힌 상호보증 등의 문제로 정확한 부실채권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은 향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의 통합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중국경제와 사회구조의 변동이 매우 급격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외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비교적 취약한 상태로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기업경영 메커니즘의 전환, 즉 기업개혁의 가속화와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력 제고,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조정을 통한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성장의 질적 제고와 함께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 국제경쟁력의 제고 그리고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실업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점진적으로 해결되어 나갈 경우 중국경제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에서 CGE 모형을 이용해서

미래 20년을 예측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1년에서 2020까지 20년 동안의 평균성장률은 7.2%로서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표 3-6> 참조).

<표 3-6> 中國 國務院 發展研究中心의 CGE 模型 利用 未來 20年 豫測

(단위:%)

	1996~2000	2001~05	2006~10	2011~15	2016~20	2001~20
GDP	8.2	8.1	7.8	7.1	6.2	7.2

주 :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준적 시나리오에 의함.

자료 :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2003)

2. 韓 · 中 經濟關係

1) 交易

한국과 중국은 수교(1992. 8)이후 10여 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국간 교역량은 아시아금융위기로 인한 199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어 2000년에는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02년에는 396억 달러에 달하였다(<표 3-7> 참조). 2002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제2위 수출국이자 제3위 수입국으로 교역 규모 면에서 한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5% 정도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홍콩과 중국을 합친 수출 비중은 대미국 수출 비중을 추월하였다(2003년 상반기에는 미국을 추월함). 이러한 빠른 증가세로 인해 2001년 이후 대중국 수출의 기여도가 대미국 수출의 기여도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즉 대미국 수출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한국의 수출 구조가 대중국 및 대아시아 지역으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韓國의 對中國交易 推移

(단위 : 억불)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교역액	63.7	90.8	116.6	165.4	199.0	236.9	184.2	225.5	314.1	314.9	396.2
수 출	26.5	51.5	62.0	91.4	113.7	135.7	119.4	136.8	186.1	181.9	227.7
수 입	37.2	39.3	54.6	74	85.3	101.2	64.8	88.7	128	133	168.6
수 지	-10.7	12.2	7.4	17.4	28.4	34.5	54.6	48.2	58.0	48.9	55.1

자료: 무역협회, KOTIS

<표 3-8> 對中國 10대 輸出 品目

(단위 : 100만 달러, %)

순위	2002				2003. 1 ~ 5			
	품 목	금 액	증가율	비 중	품 목	금 액	증가율	비 중
1	무선통신기기	2,225	343.0	9.4	무선통신기기	1,204	157.2	9.7
2	컴퓨터	1,873	154.4	7.9	컴퓨터	1,096	59.7	8.8
3	합성수지	1,694	6.9	7.1	철강관	897	91.2	7.2
4	철강관	1,281	17.9	5.4	합성수지	737	12.0	5.9
5	석유제품	1,172	-26.8	4.9	석유제품	681	62.5	5.5
6	전자관	1,139	16.3	4.8	반도체	503	131.7	4.1
7	석유화학	811	24.3	3.4	전자관	472	2.9	3.8
	합섬원료				석유화학	374	19.0	3.0
8	반도체	782	110.1	3.3	합섬원료			
9	가죽	579	-13.6	2.4	석유화학	305	55.0	2.5
10	석유화학	570	48.7	2.4	중간원료			
	중간원료				건설광산기계	258	109.1	2.1
	<소계>	12,126		51.0	<소계>	6,527		52.6
	총계	23,754		100	총계	12,398		100

자료 : 무역협회, KOTIS

韓國의 대중국 수출품 중 8.5% 이상은 공업용 원자재 및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

으며, 2002년 한국 제조업계의 대중국 수출 중 부품 및 소재의 비중은 69.4%로 추정된다. 이러한 구조는 중국의 무역구조와 관련이 있다. 즉 중국의 무역은 원자재 및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에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자재 및 중간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중국의 가공무역 형식 수출제품이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5%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화학공업제품이 2001년까지 총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199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한 전기전자제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증가율도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현재 대중국 수출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수출품 내수시장을 겨냥한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외에도 철강, 금속제품, 섬유 등 공업용 원·부자재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표 3-8> 참조).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석탄, 반도체, 정밀화학 원료, 철강, 금속, 섬유, 전자 및 기기, 석유제품, 농림수산물 등으로 1차 산품과 기초 공산품 원자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중국과의 8%이상 고속성장정책의 지속과 중국의 수출증가에 따른 수출용 원·부자재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대중국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가전, 기계, 전자 부문 등에서는 중국 생산력 및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고 수입상품 안전 품질허가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반덤핑 반보조금 조례’의 실시로 반덤핑 제소 가능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중국 수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일 등과의 관계 개선으로 선진국 제품의 중국시장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을 불리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1993년 대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된 이후 현재까지 무역 누적흑자는 4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흑자가 계속 확대·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 및 교역활동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2) 對中國 投資 現況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중국경제 성장의 중요 요소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초창기의 연해지역 특구, 개방구 등에 대한우대정책에서 하이테크 산업, 인프라시설 분야 등 업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중국의 수입장벽 완화 및 법제화 등을 통한 투자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서 2002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였으며, 향후에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완만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환경의 개선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측의 통계에 의하면, 1990년 이후 본격화된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2002년 말 현재 총 4,008건에 27.2억 달러(실행액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2년 말 누계로는 152억 달러로서 홍콩,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다. 중국의 연간 FDI 유치 총액에서 한국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3년 1.5% 수준에서 2002년 5.2%로 상승했다. 중국측 통계를 기준으로 2002년 일본과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 금액은 각각 41.9억 달러, 27.2억 달러인데, 한국의 GDP규모가 일본의 1/10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중 직접 투자는 상당히 큰 규모인 셈이다. 한국의 최근 대중국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해서 중국의 투자국(지역) 순위에 있어서도 홍콩(135.6억 달러)과 일본(36.7억 달러) 다음으로 많았다. 중국은 2002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3년 상반기에도 총 해외투자의 37.3%를 차지하면서 한국의 해외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표 3-9>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現況(中國側 統計 基準)

(단위 : 건, 억불)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건 수	1,895	1,753	1,309	1,547	2,565	2,933	4,008
계약액	21.8	16.4	14.8	23.9	34.9	35.1	52.8
실행액	13.6	21.4	18.0	12.7	14.9	19.7	27.4

자료 : 주중한국대사관(<http://koreaemb.org.cn>)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제조업이 건수 및 금액대비 기준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다. 2002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으로 전체 건수의 86.7%, 투자액의 83.4%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주요 투자 업종은 신변잡화, 음식료품, 섬유 및 의복, 신발 및 가죽 등 노동집약업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전자 및 IT,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장비 등 자본 및 기술 집약형 업종을 중심(2000~2002년 전체 투자액의 48.0%)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지역은 산둥성, 상해, 발해만 지역 및 동북 3성 등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한편 대중국 수출 구조에 있어서 유사업종의 특정지역 편중으로 인한 한국 기업간 과당경쟁 우려, 독자기업 선호에 따른 토지임차 등 경비부담 과다와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 및 제3국 수출지향형 투자에 따른 내수시장 진출능력 미흡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실제 투자상의 문제점으로는 임금구조 및 노무관리 등 중국의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 중국의 잦은 정책변화와 법규정의 자의적 해석, 합작파트너와의 분쟁, 원 · 부자재 조달난, 임금외 보조금 등 부대비용 과다,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취약에 기인한 생산성 저하 등이 지적되고 있다.

3. 中國 租稅環境의 變化 및 稅制改革 方向

1) 租稅環境의 變化

(1) 國內의 經濟環境 및 租稅政策의 變化

최근 국내의 경제변화는 중국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제방면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다수 국가의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되고 무역이 위축되어서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는 중국시장의 구조가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내수부진이 경제성장을 제약하였다. 수요부족, 수출 곤란, 물가하락, 실업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중국정부는 소비자극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채발행을 확대하고,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또한 경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

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과 아시아 국가의 경제 회복 및 세계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경제상황은 호전되기 시작해서 중국의 투자, 소비 및 수출의 증가세가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재정정책으로 인한 투자 및 소비 등으로 인해서 국민경제가 1998년 5.2%, 1999년 4.8%, 2000년 9.0%, 2001년 8.8%, 2002년 7.7% 성장하였다.

조세정책은 재정정책의 핵심요소로서 경제발전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중국정부는 최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투자를 장려하는 조세정책을 추진하였다. 투자 장려를 위해서 1999년 하반기에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를 50% 감면하다가 2000년 1월부터 징수를 중지하였다. 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기업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둘째, 수출을 장려하는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을 장려하고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하였다.

셋째,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자금을 투자 및 소비로 전환시키고, 또한 재정의 사회보장지출자금 확보를 위해서 1999년 11월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부과를 시작하였다.

넷째, 농촌에서 『세비개혁 稅費改革』을 실시해서 농민 부담을 경감하였다.

다섯째, 조세정책의 조정을 통해서 소비환경을 개선하였다.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을 조정해서 주택공급가를 인하하고, 교통 및 차량 관련 조세 및 부담금을 개혁해서 과도히 비싼 차량판매가격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는 소비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조치이다.

(2) 경제의 글로벌화와 중국조세정책의 조정

경제의 글로벌화란 무역의 자유화, 금융의 국제화, 생산의 다국적화를 의미한다고 할 때, 경제의 글로벌화는 선진국들에는 시장확대의 기회이며, 개발도상국들에는 발전의 기회이다.

중국은 15년간의 노력으로 2001년에 WTO에 가입했다. WTO가입이란 실제적으로는 경제의 글로벌화라는 조류에 편입됨을 의미하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도전이라는 중대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WTO는 국제무역에 있어 회원간에 공평한 경쟁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회원국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게되었는바 특히 조세와 관련되어 국제무역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될 원칙으로서 최혜국대우원칙, 국민대우원칙, 반보조금원칙, 투명도원칙을 들 수 있다. 시장화 개혁과정에서 중국의 특수상황에 따라 제정된 조세정책 중에서 WTO의 규칙에 위배되는 규정 및 국제관례상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해야 되고, 다음으로는 WTO의 원칙하에서 무역자유화가 경제 및 조세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조세정책 및 조세제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요소, 특히 자본의 국제 이동이 가속화되고, 정보·통신 기술의 개발과 투자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한 신종금융상품의 개발로 인하여 세계 자본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국제 자본이동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벽도 빠른 속도로 제거되는 추세이다. 각국은 국내 자본의 축적 및 해외 유출 방지,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자본에 대한 낮은 세부담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국가간 조세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와 사업소득세가 주요 조세 경쟁 대상이다. 법인세(기업소득세)와 사업소득세가 주요 조세 경쟁 대상이다. 법인세(기업소득세)의 경우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평균이 1986년 41.6%에서 1999년에는 31.4%로 낮아진 점이 이러한 조세경쟁의 치열함을 대변하고 있다.

조세경쟁은 개인소득세 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세계화는 주로 자본의 국제 이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고급인력의 국제 이동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인적 자본 축적의 동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개인소

특세 최고한계세율이 높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OECD회원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평균은 1986년 54.6%에서 1999년 39.4%로 하향 조정된 것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활발한 국제 이동은 역설적으로 조세·재정 정책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생산요소의 국가간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산업 정책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며, 자본의 흐름에 대한 제도적 장애요인이 제거되고 시장경제에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한 국가의 독립적 정책수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간 협의에 의하여 시장개입적인 금융·산업 정책은 그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세·재정 정책은 세계화 사회에서도 각 국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국제화가 심화된 현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자원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 및 국가간 생산력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자본과 기술의 축적이 둔화되지 않도록 하는 효율적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세계화 사회에서 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자본과 기술인데, 자본의 축적은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의 진보는 생산요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킨다.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면서 자본과 기술 축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 축적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중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수평적 형평성의 제고는 조세의 자원배분 왜곡 효과를 줄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IT와 조세정책

국제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기존의 조세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등장은 거래자의 신원 및 소비지 확인 곤란, 소득 추적 곤란 등 조세행정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어서도 공급장소, 재화와 서비스의 구별, 서비스의 유형 구분, 고정사업장의 정의, 정상가격의 적용곤란, 소득의 성격 구분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전자상거래가 전체 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크다고 할 수 없으나, B2B거래를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거래에 있어서는 주문만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배달·결제 등은 기존의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까지 심각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은 상황이나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적 논의를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I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세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IT산업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경감 및 경감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였다. 새로이 시작하는 S/W생산 기업의 임금 및 교육훈련비는 실제발생비용을 납부세액 계산 시에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2) 稅制改革 方向

1994년 세계개혁 이후 지난 10여 년간 중국경제는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중국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첫째,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다수 국가의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되고 무역이 위축되어서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중국시장의 구조가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고정자산투자가 위축되고 국내유효수요가 침체되어 내수부진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가운데 1994년 세계개혁 당시와는 전혀 상반된 경제현상이 발생하였다.

셋째, 2001년에 WTO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실제적으로는 경제의 글로벌화라는 조류에 편입됨을 의미하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도전이라는 중대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교육제도, 주택제도 및 의료제도 등 사회정책의 변화는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를 유발시켜 소비위축을 가져 왔다. 또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었다.

다섯째, 국제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기존의 조세제

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IT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조세지원정책 추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경제변화로 인해서 1994년에 건립된 현행 세제는 더 이상 경제상황에 부합되지 않아서 세계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1)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세계로 전환

중국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미 상당한 정도의 시장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중국은 자본, 기술 및 노동의 국제적인 이동이 가장 빈번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도 조세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 기본 방향은 OECD회원국의 예에서 보듯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하면서 세제를 간소화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법인세율(기업소득세)과 개인소득세율을 낮추고 세원을 넓게 확대하며 이원화된 법인세제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세제는 폐지하며 세수의 유실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자본과 고급인력의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과 고급 전문 인력은 비교적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세부담을 과중하게 할 경우 이들의 국외 유출로 인해서 국가의 성장기반이 잠식되며, 궁극적으로 세원 이동에 의한 세수입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자본가와 고급 전문인력은 고소득층에 속하는데, 이들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서 세부담의 누진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동성이 낮아 세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중산층의 세부담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정책중 재분배 기능을 향후에도 수행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제를 도입하고, 재산과세의 강화를 피하며 동시에 재정지출 측면에서도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WTO기본원칙과의 조화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었다. 조세와 관련된 준수해야 될 원칙으로서는 최혜국대우원칙과 국민대우원칙을 기초로 하여 반보조금 및 반덤핑원칙, 투명성원칙, 통일성원칙 및 예외원칙이 있다.

시장화 개혁과정에서 중국의 특수상황에 따라 제정된 조세정책 중에서 WTO의 규칙에 위배되는 규정 및 국제관례상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해야 되고, 다음으로는 WTO의 원칙하에서 무역자유화가 경제 및 조세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의 글로벌화에 다른 조세정책 및 조세제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먼저 조세제도의 투명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세법의 체계화가 요구되며, 법에 의해 공개적인 조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대우원칙에 의거 내·외자기업소득세가 통합되어야 하며 현재의 각종 조세우대정책도 특정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되며, 또한 수출시 증치세 환급제도를 개선하여 수출에 따른 증치세의 완전환급이 이루어져서 영세율이 보장되고, 이 전가격체제를 정비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증치세의 과세유형을 현재의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전환해서 설비투자에 대해서 환급해야 할 것이다. 개인소득의 재분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개인소득세를 개선해서 중하위 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적절히 경감하고,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을 늘려야 할 것이며, 또한 상속 및 증여세 그리고 사회보장세의 과세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4) 서부개발과 조세정책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개발전략은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의 서부지역은 에너지 및 광산자원이 풍부해서 지속적인 중국경제 발전의 배후지로서 오래 전부터 주목되고 있었다. 최근 중국정부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서부 지역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빈부격차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

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서부개발전략을 수립하고 동부지역에 집중되었던 각종 우대정책을 서부지역으로 전환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시행된 각종 조세우대정책은 동부 연해지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1997년 이후 제정된 서부지역에 대한 소득세 우대정책도 서부지역기업의 수익성 저조에 따라 효과가 크지 않은 편이다. 고정자산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불허하는 현행 생산형 증치세는 서부지역에 여러 중공업과 자원개발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세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세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재정지출, 투자정책, 금융정책, 산업정책 등의 병행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자기업뿐만 아니라 내자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투자유인정책과 조세정책 등을 통하여 서부지역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5) 조세행정의 강화

조세행정은 조세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조세제도를 위한 법규를 도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러한 조세가 현실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것이다.

1994년 세계개혁과 동시에 보편적인 납세신고 제도를 건립하였고 세무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징수관리의 전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엄격한 세무조사제도를 건립하였으며 분세제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세무기구(複線制의 세무기구)를 건립을 통해서 중국의 조세행정은 진일보하였다.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 환경의 조성 및 세무담당자의 업무능력제고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최근에는 세무정보의 전산화를 위해서 금세공정(金稅工程)이라는 국가중점 정보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제1단계에서는 주로 허위세금 계산서 적발을 목적으로 증치세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화에 초점을 두었고, 제2단계에서는 중국세무행정정보시스템(China Tax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CTAIS) 개발에 중점을 두고 조세징수업무의 전반적인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³³⁾

(6) 기타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조세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국제적인 속성상 다른 나라와 제도적인 조화를 꾀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계개편에 있어서도 OECD등의 국제적인 논의를 따라가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항상 국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IT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세지원정책도 적절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 이미 사회보장세가 시범적으로 실시중에 있지만, 사회보장체제 개혁의 방향은 첫째, 부담을 균등화해야 하며 둘째, 단위 부담을 감소시키고 개인 부담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며 셋째, 경제개혁의 결과에 대한 완충과 흡수 기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제2절 中國 租稅制度의 概要

1. 中國의 租稅制度 沿革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 조세제도는 개혁·개방의 추진을 분기점으로 두 단계로 나뉜다.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 전인 계획경제체제하의 제1단계(1953~1978)는 전통적인 사회주의체제와 그 관리방식하에서 세제가 도입 및 정비된 시기이다. 개혁·개방 정책에 착수한 이후인 제2단계(1978~현재)는 경제체제에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한 가운데, 세제가 정비되고 또 새로운 세목이 도입되어서 시행된 시기이다.

제1단계의 전기인 1949년부터 1957년까지의 시기에는 국민경제가 회복되면서 경제전반을 사회주의로 개조하는 시기로서 중국의 새로운 조세제도가 수립되어 전국에 통일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이후 중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33) 金人慶, 「中國當代稅收要論」, 人民出版社, 2002., p.277.

도태되거나 새롭게 신설되면서 중국조세제도의 기반을 이루게 된다.³⁴⁾ 1953년 중국은 경제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종전의 화물세 중 일부를 분리해서 상품유통세를 징수하고 화물세와 영업세를 개정하였으며 특별소비행위세를 폐지하였다. 이 시기에는 소유제별 경제성분에 따라 적용세율과 면세제도를 차별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를 사회주의로 개조하는데 조세를 적극 활용하였다.³⁵⁾

제1단계의 후기인 1958년부터 1978년까지의 시기에는 문화대혁명에 의해 조세제도가 대폭 축소되고 조세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중국의 조세제도가 크게 후퇴한 시기이다. 중국은 1958년 공상업계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경제관리체제의 개혁을 위해 조세의 단순화를 기본목표로 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원래의 화물세, 상품유통세, 영업세 및 인지세를 합하여 공상통일세로 개정하는 일련의 세제개혁으로 인하여 중국의 조세구조는 이후간접세 중심의 유통단계에 대한 과세방식을 위주로 하는 세제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중국의 건국초기 조세제도는 14종으로 구성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농촌에 있어서는 인민공사제도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조세징수가 정지되고 도시에 있어서도 국영기업의 조세와 이윤의 상납을 통합하는 시도가 있었다. 1959년부터 61년에 걸쳐 중국은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의 침체가 심각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농업세 등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농촌에 정기시장이 출현함에 따라 1962년 集市交易稅를 징수하였다.

1966년부터 1976년 간의 문화대혁명 기간 중 중국의 조세제도는 세제의 합병, 징수방법의 간소화, 불합리한 공상세수제도의 개혁이라는 원칙하에 조세제도가 극도로 단순화되었다. 또한 조세무용론이 등장하기도 했으며, 이는 이후 중국인의 납세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발단이 되었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세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

34) 劉佐, 「中國改革開放以來稅收制度的發展:1978-2001」,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1., p.4.

35) 劉溶滄 · 楊之剛, 「財政學論綱」, 經濟科學出版社, 1998., p.233.

한 수단으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우선 기존의 세제를 정비하고 또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였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 『中外合資經營企業所得稅法』, 『外國企業所得稅法』 등의 대외세법 對外稅法을 제정·공포했으며, 이후 중국의 조세체계는 대내세제 對內稅制와 대외세제 對外稅制라는 이원적인 구조로 발전하였다.

중국은 1983년 국영기업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 즉 利改稅改革³⁶⁾을 두 차례에 걸쳐 단행하게 된다. 이러한 利改稅改革은 기업이 실현한 모든 이윤을 국가에 상납하는 전통적 사회주의 방식에서 이윤의 일정비율을 조세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국가와 기업의 이익분배관계를 조세제도라는 법률의 형식으로 고정화하였고, 기업의 자주권 확대에 따른 기업활력의 증대 및 조세에 의의가 크다.

1984년 9월 제2차 利改稅개혁을 단행하면서 첫째, 유통단계의 조세를 정비하여 종래의 공상세를 產品稅, 영업세, 增值稅의 세종류로 대체하였다. 둘째, 건물세(房產稅), 토지사용세, 도시건설세, 차량선박사용세 등4가지 지방세를 징수하여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을 확대하였다. 셋째, 대·중형 국영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납부 후 이윤에 대하여 調節稅를 부과하였다. 이로써 중국세제의 기본골격이 완성되어서 1994년 세제개혁 전까지 시행되었다.

한편 다양한 소유제형식의 발전에 따라 『집체기업소득세잠정조례』(1985) 및 『도시개체공상호소득세잠정조례』(1986)가 제정되었다. 개인소득 격차에 따른 개인수입조절목적의 『개인수입조절세』(1986)를 제정하였고,涉外기업소득세법을 통합한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1991)을 제정해서 외자기업의 소득세법을 더 한층 체계화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경제체제개혁이 가속화되고 시장화가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공상세제로는 더 이상 조세의 거시조절기능을 수행하기가

36) 기업의 이윤상납을 납세로 전환하는 개혁을 말한다. 즉 국영기업에 대하여 종래에 취했던 이윤상납제도를 기업소득세 징수제도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로써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고 세수의 제도화가 이룩되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그동안 준비하여 온 경제체제개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1994년 시장경제에 적합한 조세체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세제개혁의 기본목표(지도이념)는 세법의 통일, 공평한 세부담, 세제의 간소화, 합리적인 분배관계 및 분배구조의 규범화 등을 통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합되는 조세 체계의 수립이다. 세제개혁의 기본원칙은 중앙정부의 거시조정 능력 강화, 개인간의 소득격차 조절, 지역간의 경제발전 격차 조절, 발전의 촉진, 공동의 富 실현, 공평한 세부담의 구현, 평등 경쟁의 촉진, 국민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세제의 간소화 및 규범화이다.

이번 세제개혁은 1949년 이후 그 규모가 가장 크고 범위도 가장 광범위하고 내용면에서도 가장 깊이가 있다.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의 필요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서 중국경제의 발전과 개혁의 심화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2. 中國의 現行 租稅體系

中國의 現行 租稅는 그 性質과 作用에 따라 6가지로 分類된다(<표 3-10> 참조).³⁷⁾

1) 流通稅類에는 增值稅, 消費稅, 및 營業稅 등 3가지 세목이 있다. 이 세목은 생산과 유통영역에서의 판매수입 또는 영업수입에 부과된다.

2) 資源稅類에는 資源稅와 城鎮土地使用稅(도시토지사용세)등 2가지 세목이 있다. 이 세목은 자원개발종사자와 도시토지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납세자가 취득하는 자원의 등급별 수입을 조절할 수 있다.

3) 所得稅類는 國有企業·集體企業·私營企業·聯營企業 및 株式制企業 등 각종

37) 징수관리체계에 따라 분류하면, 工商稅類, 關稅類 및 農業稅類가 있으며, 세수의 지배권한에 따라 분류하면, 中央稅, 地方稅 및 共享稅가 있다.

內資企業所得稅와 外國投資企業에 적용되는 外資企業所得稅 그리고 個人所得稅의 3가지 세목이 있다. 이 세목은 생산경영자의 이윤 또는 개인 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다.

4) 特定目的稅類는 城市維護建設稅·固定資產調節稅³⁸⁾ 및 土地增值稅 등 3가지 세목이 있다. 이세목은 特定한 目的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특정한 對象에 대한 調整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5) 財產 및 行爲稅類는 房產稅·城市房地產稅·車船使用稅·車船使用牌照稅·印花稅·屠宰稅·筵席稅 및 契稅 등 8가지 세목이 있다. 이 세목은 주로 특정재산 및 행위에 대하여 부과된다.

6) 農業關聯稅類는 農業稅·牧業稅·農業特產稅 및 耕地占用稅 등 4가지 세목이 있다. 이 세목은 農業과 牧畜業에 대하여 부과된다.

기타 稅類로 중국항구에서 운항하는 선박(외국 선박포함)에 대해서 등록된 純(淨)톤수에 따라 과세하는 船舶噸稅가 있다.

筵席稅는 징수 여부가 각 성(시)에 위임되어 있으나 현재 부과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

외자기업을 부담하는 세목에는 外資企業所得稅, 增值稅, 營業稅, 消費稅, 資源稅, 印花稅, 屠宰稅, 城市房地產稅, 車船使用牌照稅, 契稅, 個人所得稅, 土地增值稅, 車輛購置稅 및 船舶噸稅가 있다.

38) 현재 일시적으로 징수가 정지된 상태에 있으며, 2001년 1월1일부터 차량의 구매에 대해서 車輛購置稅가 징수되고 있다.

<표 3-10> 中國의 現行 租稅制度의 概要

조세의 유형과 명칭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1. 流通稅類 1) 增值稅 2) 消費稅 3) 營業稅	-중국경내에서 재화의 판매·가공·수리서비스 -담배, 주류, 화장품, 귀금속, 가솔린, 디젤류, 타이어, 오토바이, 소형차량 -교통운수업 건축업, 금융보험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오락업, 호텔, 음식 등 서비스업, 무형자산 양도, 부동산 판매	-재화의 판매가격 과세용역의 가격 -소비재의 판매가격 (증치세 제외가격) -과세용역 제공에 따른 영업수입액	-17%(일부품목13%) -수출재화 영세율 -비례세율(3~45%) -정액세율 -3% 혹은 8% (오락업5~20%)
2. 資源稅類 1) 資源稅 2) 城鎮 土地使用稅	-원유, 천연가스, 석탄, 금속, 비금속광물소금 -도시지역 토지사용권	-판매수량 -실제점용토지면적	-톤당 혹은 m ³ 당 단위세액 -평방미터당 단위세액
3. 所得稅類 1) 企業所得稅 2) 外商投資 企業과 外國企業 所得稅 3) 個人所得稅	-연간 수입총액에서 대응되는 원가·비용 등 공제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생산·경영화동소득과 기타소득 -임금 및 급여소득 -개인사업자 소득 -도급경영·임차경영소득 -개인서비스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소득임대소득 -이자, 배당, 상금 등 우연발생소득	-과세소득 -과세대상 소득액 -월 소득액] 연간소득] 과세대상소득액 -수입금액	-33% -기업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 -5%~45% -5%~35% -20% -20%

조세의 유형과 명칭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4. 特定目的稅制 1) 城市維護建設稅 2) 固定資產投資方向調節稅(일시정지) 3) 土地增值稅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과세대상기업, 단위, 개인 -중국내에서 각종자금을 사용하여 고정자산투자를 진행하는 단위 및 개인 -부동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한 단위 및 개인	-납세인이 실제 납부한 증치세·소비세·영업세 -실제 완성된 투자액 -부동산 양도차익	-1% ~ 7% -0% ~ 30% -30 ~ 60%
5. 財產·行爲稅額 1) 房產稅 2) 城市房地產稅 3) 車船使用稅 4) 車船使用牌照稅 5) 印花稅 6) 屠宰稅	-재산세의 일종으로 주택 소유자, 담보인, 대리 권리인에게 부과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중국내에서 차량, 선박의 소유, 사용 단위 및 개인 -외국투자기업 외국국적 소지자로서 과세대상차량, 선박의 사용인 -중국경내에서 인지세 잠정 조례에 열거된 문서 및 증빙을 작성·수령하는 각종 단위 및 개인 -중국경내에서 도축업을 하는 단위 및 개인	-가옥의 잔여가치 -가옥의 임대수입 -건물의 가액기준 -건물의 임대수입 기준 -선박 純(淨)톤수 (적재정량) -차량수량(정 톤수) -선박純(淨)톤수 -과세대상 문서상에 기재된 금액 (비용, 수입액 등) -과세대상 문서건수 -도축수량 -도축중량	-1.2% -12% -1.2% -18% -단위세액 -선박 기준 -단위세액 -적용세율 -단위세액 -단위세액 -40%

조세의 유형과 명칭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7) 筵度稅	-중국경내에서 설립된 숙박 및 음식영업 장소에서 연회를 주관하는 각종 단위 및 개인	-연회비용 총 지급금액 (봉사료 포함)	-15% ~ 20%
8) 契稅	-소유권 이전 변동 부동산의 매수인 또는 저당권자	-매매계약금액	-매매 6% -저당 3%
6. 農業關聯稅類			
1) 農業稅	-농업종사 단위 및 개인	-토지 평균생산량	-지역별 비례세율
2) 牧業稅	-목축업 종사단위 및 개인	-총수입 혹은 가축 두수	-비례세율, 정액세율
3) 農業特產稅	-농업특산물 생산단위 및 개인	-실제수입	-비례세율
4) 耕地占用稅	-경지점용 비농업건설 단위 및 개인	-경지면적	-정액세율
* 船舶ton稅	-중국항구에서 운항하는 선박(외국선박 포함)의 소유주	-등록된 純(淨)톤수	-단위세액 (0.45 ~ 9.30원/ton)
* 關稅	-중국경내에서 수출입에 종사하는 기업, 개인	-수출입 화물수량 × 단위당과세가격 × 적용세율	-수입품 8 ~ 270% (2 ~ 220%), 수출품 10 ~ 100%

3. 中央稅와 地方稅

課稅權의 主體를 基準으로 中國의 租稅를 分類하면 中央稅와 地方稅,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공동세원인 共享稅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中央稅에 속하는 것

- ① 관세
- ② 소비세(세관에서 대리징수하는 消費稅, 增值稅를 포함함)
- ③ 중앙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중앙기업의 기업소득세³⁹⁾
- ④ 지방은행, 외자은행 및 은행 이외의 금융기구의 기업소득세
- ⑤ 철도 부문, 國名이 붙어 있는 전업은행(中國工商銀行, 中國銀行, 中國建設銀行, 中國農業銀行 등), 보험총공사의 營業稅, 企業所得稅, 城鄉維護建設稅

2) 地方稅에 속하는 것

- ① 위의 ⑤를 제외한 營業稅
- ② 지방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지방기업의 기업소득세. 다만, 위의④, 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③ 個人所得稅
- ④ 鄉鎮土地使用稅
- ⑤ 固定資產調節稅
- ⑥ 위의 ⑤를 제외한 城鄉維護建設稅
- ⑦ 房產稅, 車船稅, 印花稅, 契稅, 屠宰稅, 農業稅, 耕地占用稅, 遺產稅, 土地增值稅, 土地使用稅, 宴席稅

39) 기업의 소속관계에 따라서 소득세 세수를 배분하던 기존의 방법을 개혁하여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 세수를 중앙과 지방에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인 所得稅稅收 分享改革을 2002년 1월1일부터 실행함에 따라 소득세 부문에서는 중앙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방법이 변화가 있었다.

3) 共享稅에 속하는 것

- ① 增值稅: 75%는 중앙정부, 25%는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 ② 資源稅: 海洋石油資源稅는 중앙정부에 기타는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 ③ 證券交易稅: 94%는 중앙정부, 6%는 지방정부에 귀속된다.⁴⁰⁾

4. 稅務機構 組織

중국의 현행 각급 세무기구 조직도는 <그림 3-1>과 같다.

국가세무총국은 국가세무국 계통을 수직적으로 관리하며, 省級인민정부와 협조해서 省級지방세무국을 이중 지도한다. 省이하지방세무국은 상급 세무기관 및 동급 인민정부의 이중 지도를 받으며, 상급 세무기관의 수직적 지도가 주된 관리체제이다.

국가세무총국의 수직적인 관리 및 省級인민정부와의 협조를 통한 이중 지도를 통해서 세제와 조세정책이 법에 의해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였고, 세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일성 및 투명성이 보장되어 국가의 조세징수권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02년 초 기준으로, 省級세무국은 61개, 副省級 도시 세무국이 30개, 地(市·區·盟·州) 세무국이 985개, 縣(市·區·旗) 세무국 5,261개, 基層 稅務分局(所)이 35,330개가 있다. 전국 세무 관련 인원은 89만 명이며, 이 중에서 국가세무총국 소속이 49만 명, 지방세무국 소속이 40만 명이 있다.⁴¹⁾

國家稅務總局的 조직은 10司 2局 1廳⁴²⁾과 10개의 직속사업단위⁴³⁾로 구성된다.⁴⁴⁾

40) 증권거래에 따른 印花稅세수에 대해 중앙정부에 94%가 귀속되고 그 나머지 6%와 기타 印花稅 수입은 전액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41) 劉佐, 「中國改革開放以來稅收制度的發展: 1978-2001」,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1., p.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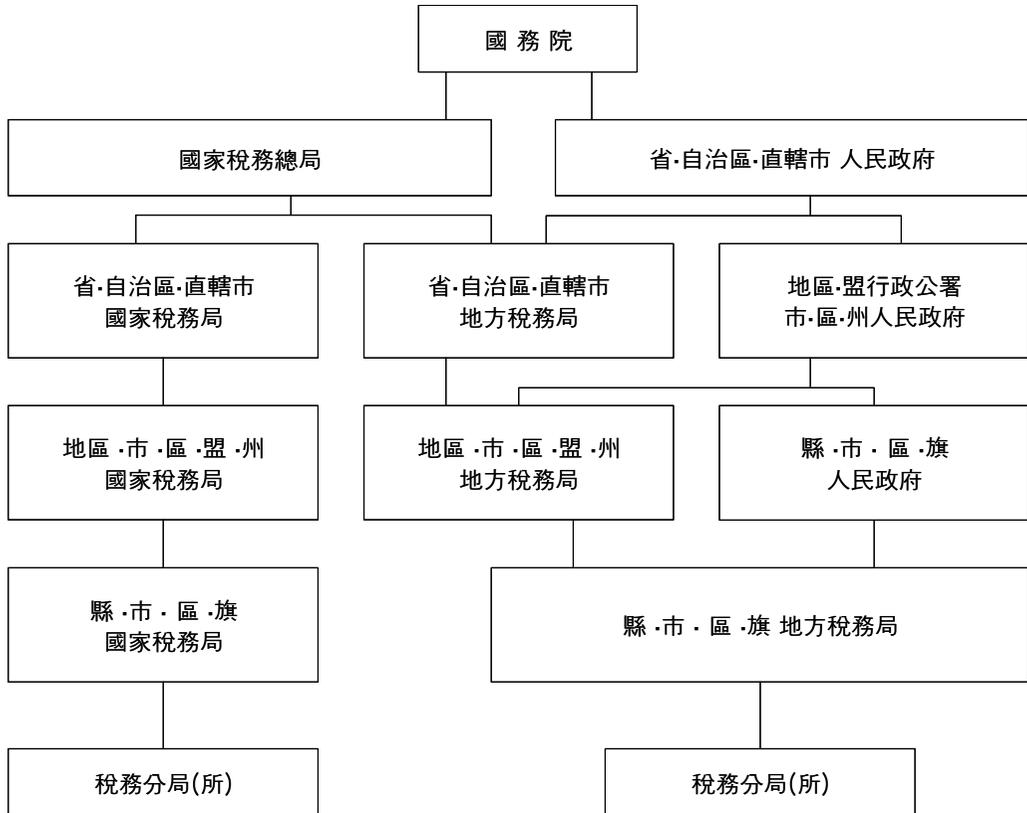
42) 10司란 政策法規司, 流轉稅管理司, 所得稅管理司, 地方稅務司, 國際稅務司, 進出口稅收管理司, 徵收管理司, 財務管理司, 計劃統計司, 人事司를 말한다. 2局이란 農業稅徵收管理局 및 機查局을, 1廳이란 辦公廳을 말한다.

43) 직속사업단위란 離退休幹部辦公室, 教育中心, 機關服務中心, 信息中心, 注 稅務師管理中心, 稅收科學研究所, 中國稅務雜誌社, 中國稅務報社, 楊洲稅務進修學院을 말한다.

省級(自治區와 지합 市포함) 地方稅務機關에는 地方稅務局이 있으며, 7處 1室⁴⁵⁾로 구성되며 지방의 세무행정을 담당한다.

關稅와 船舶噸稅는 海關總署에서 담당하며, 국무원 직속기관이다.

<그림 3-1> 中國의 現行 各級 稅務機構 組織圖⁴⁶⁾



44) 劉佐, 전계서, p.389.

45) 7處 1室이란 務政處, 徵管理處, 設外稅收處, 計劃會計處, 票証管理處, 人事處, 其他業務處 및 辦公室을 말한다.

46) 한상국, “중국 조세제도와 대중국 투자기업의 조세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4., p.53.

4. 中國 稅法의 法律體系

중국에서 법이라고 칭해지는 것에는 헌법, 법률, 법령, 행정법규 및 각종규정·판례 등의 규범성 문서가 있으며, 중국에 있어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에는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로 약칭), 국무원 및 지방급인민대표회의가 있다. 전인대는 헌법을 개정하고, 형사·민사·국가기구 및 기타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한다.⁴⁷⁾ 국무원은 헌법 및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공포한다.⁴⁸⁾ 지방인민대표회의는 법률이 정하는 권한에 바탕을 두고 지방성 법규를 제정 및 공포한다.⁴⁹⁾

이처럼 중국의 법형식이 복잡 다기하지만, 1987년 4월에 제정된 「行政法規制節次暫定條例」에 의하면, 행정법규는 조례·규정·辦法으로 나뉜다. 조례란 특정 분야의 행정활동에 대하여 全面的·系統的 法規를 정한 것이며, 규정이란 특정 분야의 행정활동에 대하여 부분적 규정을 정한 것이고, 辦法이란 특정 사항의 행정활동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을 정한 것이다. 국무원의 각 부서 및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하는 법규에는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규정과 辦法에는 이러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으므로 국무원의 각 부서와 지방인민정부에서도 규정·辦法의 명칭을 가지는 법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의 세법은 헌법에 따라 하나의 통일된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一稅目一稅法主義에 따라 하나의 세목을 하나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全人大와 그 상임위원회가 제정하는 조세법률, 국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결정·명령 그리고 국무원 산하 각부처가 제정하는 명령·지시·규정 및 예규 등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성이 있는 세법은 全人大, 동상무위원회 및 全人大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무원에서 제정한다. 헌법 제99조 및

47) 憲法 제62조.

48) 憲法 제89조.

49) 憲法 제99조, 100조, 107조.

제 100조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회의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따르면,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회의 그리고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및 국무원이 비준한 대도시의 인민대표회의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 지방성 법규는 상위 법률인 헌법과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해서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全人大 및 국무원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헌법 제90조에 의하면 국무원의 각 부와 위원회는 법률 및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 및 명령에 근거하여 해당 부서의 권한 내에서 명령·지시 및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중국의 세법은 헌법에 따라 하나의 통일된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각급 국가기관의 조세입법 권한이 서로 상이해서 제정된 법률·법규·규칙의 법률등급과 효력은 같지 않다. 세법의 법률등급을 층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국무원이 위임받아서 제정한 각종 조세관련 행정법규에 대한 해석권은 재정부 또는 국가세무총국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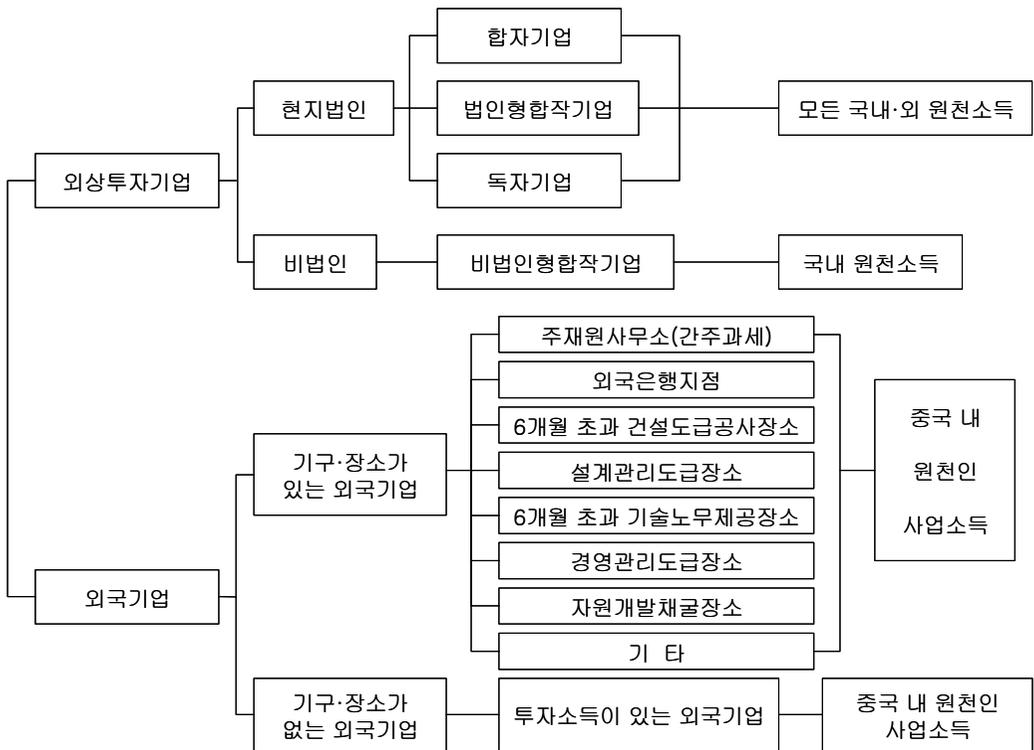
조세기본법은 조세의 모법이고 조세제도의 총강으로 다른 세법의 법률과 법규를 지도하는 입법근거이며 상위법이다. 조세기본법은 주로 조세의 입법원칙, 입법체계, 과세권자와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조세행정조직, 조세사법, 전문용어 등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법률적인 규범을 한다. 조세법률체계는 기본법의 존재여부에 따라 대륙법체계와 보통법체계로 구분하는데 조세기본법을 가지고 있는 대륙법체계는 법률체계의 규범성과 완전성을 중시하므로 입법이나 개정 등의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다. 그러나 기본법이 없는 보통법체계는 입법이나 개정 등이 용이한 반면에 모든 것이 개별세법에 의존하므로 체계가 규범적이지 못하고 불완전하여 각 세법이 상충하는 문제 등이 있다. 중국은 1995년 전인대에서 조세기본법인 「세수기본법」을 입법할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세법체계가 규범적이지 못하고 불완전하여 각 세법이 상충하는 문제 등이 있다.

제3절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所得稅制

1. 納稅義務者

外商投資企業과 外國企業所得稅(外資企業所得稅로 약칭함)의 납세의무자는 中國 경내에 설립한 外商投資企業과 外國企業이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納稅義務者 및 課稅所得의 範圍⁵⁰⁾



중국경내에 설립한 外商投資企業에는 現地法人과 非法人이 있다. 現地法人에는 中外合資經營企業, 中外合作經營企業과 外資企業이 있다. 非法人에는 법인을 구성

50) 김정찬, "중국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학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98), p.40.

하지 않은 中外合作經營企業(비법인형 중외합작기업)이 있으며, 법인격이 없다. 비법인형 中外合作企業은 각각의 합작자측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소득세를 계산·납부하는 경우에 중국측은 내자기업 관련 세수법규(기업소득세 조례)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고, 외국측은 외국회사·기업·기타 경제조직이 중국경내에 설립한 기구·장소로 간주하여 외자기업소득세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외상투자기업의 조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업소득세를 일괄계산해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구성하지 않은 중외합작경영기업이 정관(公司章程)이 있고 공동경영관리·통합계산하고, 손익과 투자위험을 공동부담 하는 경우에는 외상투자기업의 조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기업에는 중국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외국의 회사·기업과 기타 경제조직과 기구·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으나 중국경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의 회사·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으로 구분된다. 기구·장소란 관리 기구, 영업기구, 행정(辦事)기구와 공장·자연자원의 채취장소, 하청건축·설치·조립·탐사 등 공사작업을 하청하는 장소와 역무를 제공하는 장소, 영업대리인(외국기업의 중국내 사업장)을 말한다. 영업대리인이란 외국기업의 위탁대리를 받아 경영에 종사하는 회사·기업·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외자기업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기구·장소의 개념은 고정사업장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그 범위는 고정사업장보다 좁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리기구, 영업기구, 대표사무소, 공장, 천연자원개발채굴장소, 건축·설치·조립·탐사 등의 도급 請負에 의한 공사작업장소 내지 용역 제공장소, 영업대리인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건축 등의 도급, 용역제공장소 등에 대하여는 6개월을 초과하여 중국경내에 존속하는 경우에 과세된다는 실무가 정착되어 있다. 이것들은 조세조약에 있어서 고정사업장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조세조약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정해진다. 현행 세제에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중국경내 거주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관리와 지배기준 및 법인등기기준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중외합자

경영기업, 외자기업 및 유한책임의 중외합작경영기업은 모두 중국경내에서 등기되고 관리·지배되는 법인이 되기 때문에, 중국경내 거주자로 취급된다. 그러나 등기계약에 따라 경영하는 무한책임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중국경내 비거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⁵¹⁾

외국투자기업 중 중국경내에 본부기구가 있어서 거주자로 취급되는 현지법인은 무제한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및 국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이것은 중국이 국제과세에 있어서 속인주의 또는 거주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징세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중국경내에 본부기구가 없어서 거주자로 취급되지 않는 외국투자기업⁵²⁾은 제한납세의무자로서 중국경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진다.

외국기업은 제한납세의무자이다. 중국경내에 설립된 기구장소에서 생산·경영 소득이 있는 외국기업은 중국경내 원천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자를 지고, 중국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경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 있는 외국기업은 중국경내 원천소득인 투자소득 또는 자본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자를 진다.

2. 課稅對象

외자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생산·경영 소득과 기타의 소득이다.

생산·경영 소득이란 제조업, 辦掘業, 교통운수업, 건축설치업,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水利業, 상업, 금융업, 서비스업, 탐사개발작업, 기타 업종의 생산·경영 소득 등을 말한다. 기타 소득이란 취득한 이윤(배당), 이자, 임대료, 재산양도소득, 특허권·전용기술·상표권·저작권의 제공 또는 양도소득, 영업외수익 등의 소득을 말한다.

51) 조현준, 「中國의 外資企業 租稅制度」,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3., pp.28-29.

52) 예를 들면 법인으로서는 설립되지 아니한 합작기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중국 국내 境内원천소득이란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의 중국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지 않고 취득한 특정의 소득을 말한다. 전자에는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중국경내 기구·장소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이윤(배당),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와 기타 소득이 있다. 후자는 다음의 소득이다.

- ① 중국경내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배당)
- ② 중국경내에서 취득한 예금 또는 대출이자, 채권이자, 선급금 또는 이연지급이자 등
- ③ 재산을 중국경내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취득한 임대료
- ④ 중국경내에서 사용하는 특허권, 전용기술, 상표권, 저작권 등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사용료
- ⑤ 중국경내의 건물·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 토지사용권 등 재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수익
- ⑥ 재정부가 과세하기로 확정한 중국경내에서 취득하는 기타소득

3. 稅率

국가대외개방, 외자유치, 기술도입의 방침정책에 의하여 세부담의 적정한 경감원칙에 근거하여 소득종류에 따라 상이한 비례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외상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외국기업의 중국경내에 설립된 기구·장소의 소득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3%가 부과된다. 각성, 자치구, 지할시 인민정부는 지방소득세 감면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중국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지 않은 외국기업이 중국경내에서 취득하는 이윤,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와 기타 소득이 있거나, 기구·장소를 설립했으나 상기 소득이 그 기구·장소와 실제적인 연계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지급자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預提所得稅한다. 현재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와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한국법인에 대하여는 한중조세조약 제10조 제2항(배당), 제11조 제2항(이자), 제12조 제2항(사용료)의 적용이 있고, 배당의 일부를 제외하고 원천징수세율은 10%를 한도로 하여 과세한다(한중조세 조약 제23조 제3항). 다만,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은 중국 국내법에 따라 면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과세는 없다.

4. 課稅所得의 計算

1) 과세소득액의 계산

(1) 과세소득(應納所得)

세법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중국경내 생산·경영기구 및 장소가 매 납세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원가·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text{과세소득} = \text{총수입금액} - \text{원가} \cdot \text{비용} \cdot \text{손실}$$

(2) 납세연도

원칙적으로 양력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① 외국기업이 세법에 규정한 납세연도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현지 세무기관에 신청하여 비준을 거친 후 만 12개월의 당해 기업 회계연도를 납세연도로 할 수 있다.

② 기업이 하나의 납세연도 중에 개업하거나 또는 합병, 폐업 등 원인으로 동 납세연도의 실제경영기간이 12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기간을 하나의 납세연도로 간주한다.

③ 기업이 청산하는 때에는 청산기간을 하나의 납세연도로 간주한다.

2) 과세소득 계산의 원칙

(1) 권리의무발생주의(權利發生主義)

이미 당기에 실현된 수입과 비용은 실제 수취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당기의

수입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반대로 당기에 속하지 않는 수입과 비용은 지급과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당기의 비용이나 수입으로 처리 않는다. 이는 회계원칙의 권리의무발생주의이다.

(2) 자본지출과 영업지출(수익지출)의 구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에 대하여 세법상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단, 세법과 실시세칙상에 규정된 자산과 비용의 처리에 관한 기타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의 효익이 1이상의 회계연도에 미치면 자본적 지출로, 당해연도에만 미치면 영업지출(수익지출)로 처리한다는 기업회계제도상의 개념과 일치한다.

(3) 수입과 비용의 대응

과세기간 동안 취득한 수입과 관련된 원가(成本), 비용은 대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세가 면세되거나 비과세수입항목의 경우 이와 관련된 원가, 비용은 과세소득 계산상 공제가 불가하다.

(4) 계속성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은 전기와 당기, 차기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 과세소득 계산원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방법은 새로운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5) 세법우선

기업의 재무, 회계계산방법이 세법과 실시세칙의 규정이 다른 경우 과세소득 계산 시에는 세법과 실시세칙을 따라야 한다.

3) 其他 課稅所得 關聯 規定

(1) 중외합작기업이 제품분할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합작자들이 제품을 배분하는 시점에 수입을 수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금액은 제3자 판매가격에 의하거나 통상의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2) 비화폐성자산(고정자산, 무형자산과 기타 재화 포함)을 수증 받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하여 자산항목에 산입하고 당해연도 수익으로 계상한다. 이전연도에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보전한 후의 잔액을 당해연도 소

득으로 계상한다. 이전연도 결손보전 후의 잔액이 크고, 기업이 일시에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쳐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평균적으로 기업과세소득액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3) 화폐성자산을 수증 받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수익에 산입한다.

(4) 미상환채무의 채권자가 2년 넘게 상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채무면제 이익은 당해연도의 수익에 산입한다.

4) 課稅所得額의 基本計算公式

기업회계상 사업소득의 과세소득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 산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조업

과세소득액 = 제품매출이익 + 기타업무이익 + 영업외수입 - 영업외지출

(2) 상업

과세소득액 = 상품판매이익 + 기타업무이익 + 영업외수입 - 영업외지출

(3) 서비스업

과세소득액 = 순업무수입금액 + 영업외수입 - 영업외지출

(4) 기타업종은 상기 공식을 참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5) 例外的인 課稅所得額 計算方式

과세소득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위의 계산식에 의해 산정하여야 하나(소득과세 방식), 추정이익과세방식 및 경비과세방식에 의해 과세소득 계산을 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다. 즉 기업이 완전하고 정확한 원가 및 비용의 증빙을 제출할 수 없고 과세소득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세무당국이 동일 업종 또는 유사업종의 이익수준을 참조하여 이익률을 추정하고 그 과세소득액을 계산하는 추정이익과세방식이 이루어진다. 또한 기업이 완전하고 정확한 수익의 증빙을 제출할 수 없고 수익액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방세무당국이 원

가, 비용에 합리적인 이익을 가산하는 등의 경비과세방식을 채택하여 그 과세소득액을 추정하고 확정할 수 있다.

6) 課稅所得額 歸屬時期

기업이 수입금액을 납세연도에 걸쳐 실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납세연도 내에 실현한 수입금액은 권리의무발생주의 權責發生制에 의하여 확정된다. 즉 상품 또는 제품이 인도되거나, 공정을 완료하여 교부하는 때, 서비스를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대가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수입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영수입은 기간별로 나누어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① 제품 또는 상품을 할부판매 할 경우에는 제품 또는 상품을 교부하거나 송장을 발행하는 날 또는 계약상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매출수입의 실현한 날로 확정할 수 있다.

②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건축·설치·조립공사와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공사진도 또는 완성한 작업량에 근거하여 수입의 실현을 확정할 수 있다.

③ 기타기업을 위한 대형 기계설비·선박 등의 가공·제조 등 작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진도 또는 완성한 작업량에 근거하여 수입의 실현을 확정할 수 있다.

7) 結算金(缺損) 보전

외상투자기업 또는 생산·경영에 종사하기 위해 중국경내에 설치한 외국기업의 기구·장소가 과세연도 중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기 과세연도의 소득과 상계할 수 있으며, 당해 소득이 결손보전에 부족한 경우에는 향후 5년 이내의 과세연도 내에 이월보전이 가능하다. 결손금은 재무보고서상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보고서상 결손을 세법규정에 따라 조정한 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결손발생연도의 다음연도에 실현한 이윤은 우선 이전연도의 결손보전에 사용

해야 한다. 연속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후연도에 이윤이 실현될 때, 우선 제1결손연도의 결손액을 보전한 다음 제2연도의 결손을 보전해야 한다. 결손연도 보전 순서를 바꾸거나 임의로 특정연도의 결손을 선택하여 보전할 수는 없다.

② 5년 이내 보전을 결손발생 다음 연도로부터 계산하여 연속 5년을 결손보전기간으로 한다.

③ 결손보전, 이익발생연도의 확정, 감면기간의 확정간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기업이 설립초기에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5년 결손보전 기간 내에 동 결손을 전부 보전한 후 이윤이 있는 연도를 이익발생연도로 하고, 생산성외상투자기업은 동 이윤취득 연도부터 정기면세·반감 혜택을 향유한다.

㉡ 정기면세·반감기간 내에 특정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동 연도는 하나의 면세·반감연도이다. 즉 정기면세·반감기한은 연속계산 해야지 결손이 발생했다하여 기한을 연기할 수 없다.

㉢ 감면기한 내에 발생한 결손을 향후 5년 내에 보전할 수 있고 결손보전기한과 감면기한이 동일한 시기일 경우에는, 상호 연기해서는 안 된다.

제4절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租稅優待制度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4개 현대화 노선(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의 실현을 위해서 서방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자 많이 노력하였다. 중국정부는 우선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대외개방을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경제특구 및 經濟技術開發區를 설치하였고, 개방속도가 가속화되자 내륙 지방에 대한 문호도 개방하여 외국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무원(한국의 행정부에 상당함)은 1980년에 深圳, 廈門, 珠海 및 汕頭의 4개 지역에 경제특구(1988년 海南省 추가)를 설치하였다. 국무원은 1988년에 14개 연해개방도시 沿海開放城市를 지정하고 개방하였다. 이 중 12개 도시의 일부에 14개의 經濟技術開發區를 지정하였고, 經濟技術開發區는 계속 확대되어 총 30개로 늘어났

다. 중국정부는 대순환 경제발전전략 아래 沿海經濟開發區, 高薪技術產業開發區, 沿江開放城市, 內陸開放城市, 邊境對外開放城市 등을 지정했다. 이와 같은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경제기술개발구, 연해경제개발구 등과 같은 대외개방지구는 국무원의 허가를 얻어서 설립되지만 관리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인민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대순환 경제발전전략 아래 설치된 경제특구, 연해경제개발구,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연강개방도시, 내륙개방도시, 변경대외개방도시 등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방향을 지도하기 위해서 동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각종 조세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투자자에 대한 조세우대조치를 포함하는 각종 투자관련 법규를 제정하였다. 관련 세법에서 『국가는 산업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방향을 지도하고, 선진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부 또는 대부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관련 세법의 하위 법령에서 『국가가 권장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분야에서 세수특혜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유관법률 및 행정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각종 조세우대조치는 국무원이 결정하며, 지방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도 세액을 감면하는 정책을 반포할 수 없다.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득세에 대한 조세우대정책을 분석하면, 중국에서 조세우대정책은 일반적인 세제상 우대정책과 지구(지역)별 세제상 우대정책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세제상 우대정책이란 지구 및 지역의 성격에 따른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중국 내 전역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우대제도를 말하고, 지역별 조세우대정책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수출촉진 등과 같은 정책상의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조세우대 내용을 달리하는 정책을 말한다.

투자자는 지역별로 상이한 조세우대정책을 충분히 잘 이해해서 상이한 동 정책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유리한 투자지역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투자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비교적 큰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中國 外商投資企業의 租稅上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제1절 增值稅의 部分的인 還給 問題와 解決方案

1. 零稅率制度

1) 意義

부가가치세법상 零稅率制度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제 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세율 적용에 있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없게 할 뿐 아니라 그 전 단계의 과세거래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하여 거래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영세율은 완전 면세라고 할 수 있다.⁵³⁾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중의 하나인 前段階稅額控除方式이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식이므로 매출세액 산출시 零(0)의 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이 零(0)이 되고 따라서 납부세액이 負(△)가 되어 환급세액이 된다. 零稅率制度란 이러한 과세방식에 착안하여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줌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배제하여 주는 면제제도의 일종이다.

53) 이에 비하여 면세(면세)란 일정한 재화·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은 부담하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면제하여 결과적으로 매출세액만이 면제되는 것이다. 전단계세액공제제도하에서 면세사업자는 자기의 매입세액은 부담하고 매출세액만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제의 면세를 일반면세 또는 불완전면세라고 한다.

2) 政策目的

(1) 용이한 국경세 조정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과세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일원칙인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국제 거래되는 재화를 생산·수출하는 국가에서는 동 재화에 과세한 소비세를 면세·환급하고 수입소비국에서 동 재화에 과세하도록 해서 국경세를 조정하고 있는데, 零稅率制度는 가장 완벽한 국경세 조정 제도이다.

(2) 수출 등 외화획득사업의 지원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등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므로 수출하는 재화 등의 가격조건이 그만큼 유리하여지므로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사업자의 수출에 따른 자금부담을 해소하여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하게 되고 수출산업을 육성하게 된다.⁵⁴⁾

(3) 主要國의 零稅率制度

부가가치세를 채택한 국가 중 OECD회원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수출 및 수출과 유사한 거래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零稅率의 적용범위는 당해 국가의 조세정책상의 이유에서 또는 다른 정책상의 이유에서 각기 상이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등은 수출 및 수출과 유사한 거래에 국한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멕시코,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등은 식료품(기초식품), 의약품(의료기기) 등에도 적용하는 등 그 범위가 비교적 넓다.

2. 中國의 零稅率制度

현행 增值稅에 의하면 재화(貨物)의 수출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⁵⁵⁾. 중국정부는 국경제 조정의 방법으로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수출 재화에

54) 이와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세계상의 지원책이라 하겠다.

55) 增值稅暫行條例 第2條 第3項.

이미 부과된 매입세를 환급함으로써 수출 재화에 대한 세부담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增值稅 환급정책은 영의 세율에서 출발하기는 하였으나 여러 번의 변화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는 과세하고 동시에 일정율을 환급하는 정책을 채용하고 있다. 1994년 새로운 세제의 시행과 더불어 국가세무총국은 『國家稅務總局關於印發出口貨物(免)稅管理辦法: 국세발(1994) 031호』를 제정하여 수출재화에 대한 환급과 면세의 범위, 환급세율,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수출재화에 대한 증치세의 면세와 세액환급 처리과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면세정책을 유지하고 새로운 환급과 면세정책을 적용하지 않았다(단,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1994년 1월 1일 이후에 비준·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내자기업과 같이 새로운 환급과 면세정책을 적용받았다.

중국정부는 『국가세무총국』에 따른 환급과 면세와는 별도로 재정수입 조절을 목적으로 『增值稅暫行條例 第2條』의 위임규정을 근거로 국무원의 결정에 의하여 환급세율을 여러 차례 조정하였다.⁵⁶⁾

환급세액의 계산방법도 변하였다. 1996년 말까지는 환급세액의 계산은 “先徵後退(先징수 後환급)”과 “免(면세), 低(공제), 退(환급)⁵⁷⁾”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나 1997년 1월 1일부터는 “免(면세), 低(공제), 退(환급)”로 단일화하였다.⁵⁸⁾

56) 환급세율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조정되며, 최근에는 2003년 10월에 조정된 바 있다.

57) 수출기업이 제품생산을 위하여 원·부재료를 구입할 때 증치세를 선징수하고, 제품의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한다. 면·저·퇴와의 기본적인 차이는 先徵後退는 수출까지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여 우선 징수하고 국가계획에 따라 별도로 환급해주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때까지 자금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先徵後退에 의한 환급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납부할 세액 = 내수수출세액 + 수출액 × 환율 × 징세율 - 매입세액
 - 환급세액 = 수출액 × 환율 × 환급세율

58) 수출기업이 내수와 수출을 겸영하고 독립적으로 수출재화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당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미공제 잔액이 있는 경우 수출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과 미공제 잔액을 비교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수출액 × 세율 ≥ 미공제 잔액의 경우에는 미공제 잔액이 환급세액, 반대의 경우에는 수출액 × 세율이 환급세액). 이 방법은 수출에 대하여는 면세하고(免), 환

수출에 따른 증치세의 환급과 면세에 관한 현행제도를 『財政部, 國家稅務總局關於進一步進出口貨物實行免抵退辦法的通知; 재세자(2002) 7호』⁵⁹⁾ 및 『生產企業出品貨物 "免, 抵, 退"稅 管理操作規程; 국세발(2002) 11호』(試行)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 현행 “免, 抵, 退”稅의 실행 방법

1) 기본 요건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 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생산기업⁶⁰⁾이다. 즉 생산기업이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자영 또는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수출(이하 “생산기업 수출”로 약칭)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증치세 “免, 抵, 退”稅 관리방법을 실시한다. 생산기업이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의 관리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또한 상업합자기업이 중국명품을 수출하는 경우, 外經貿部가 비준 시에 확정된 수출경영 범위 내에서 면세 및 환급 적용을 받는다. 증치세 소규모납세자가 自產貨物⁶¹⁾을 수출하는 경우 계속 증치세 징수면제방법을 실시한다.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自產貨物이 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소비세 징수를 면제한다.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 대상 재화는 ① 반드시 自產貨物이어야 하고, ② 증치세 또는 소비세의 과세범위에 속하는 재화여야 하며, ③ 대상 재화가 반드시 통관절차를 거쳐 중국경내를 벗어나야 하며, ④ 재무상으로 수출매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금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우선 공제하며(抵), 잔액을 환급(退)하므로, “免, 抵, 退”라 부른다.

59) 특정한 경우에는 선징후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60) 생산기업이란 독립채산을 하며 주관세무기관이 증치세 일반납세자로 인정하고 아울러 실제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과 기업집단을 말한다.

61) 생산기업이 원부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당해 기업이 직접가공 생산하거나 위탁가공해서 생산한 재화.

2) 환급 및 면세정책

중국정부는 특정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재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환급 및 면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 수출면세 후 환급

다음의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세액을 환급한다.

① 수출경영권을 가진 내자생산기업의 직접 수출 또는 外貿企業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自産貨物

② 수출경영권을 가진 外貿企業이 직접 매입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기타의 外貿企業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재화

③ 생산기업이 外貿企業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自産貨物

④ 기타 특정기업이 수출하는 재화

(2) 수출면세와 매입세액 불환급

다음의 경우에는 수출에 대하여 면세하고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① 생산기업에 속하는 소규모 납세인이 직접 수출하거나 外貿企業에 위탁하여 수출하는 自産貨物

② 外貿企業이 소규모 납세인으로부터 또는 일반계산서에 의하여 매입하여 수출하는 재화

③ 外貿企業이 직접 매입하여 수출하는 국가규정면세품

(3) 수출과세 후 매입세액 불환급

원유, 천연우황, 사향, 銅 등을 수출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 進料加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이외에는 增値稅를 부과하고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3) “免, 抵, 退”稅의 정의 및 장점

“免”稅는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自産貨物에 대하여 당해 기업의 생산판매 단계의 증치세 징수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抵”稅는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自産貨物에 소모되는 원재료·부품·연료·동력

등에 포함된 환급해야 할 매입세액을 내수매출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退”稅는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自産貨物에 당월 공제(차감)되어야 할 매입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큰 경우 차감하지 못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免, 抵, 退”稅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⁶²⁾

첫째, 대외무역체제의 개혁을 추진하고 생산기업의 자영(위탁) 수출을 확대하는데 유리하다.

둘째, 기업의 자금회전과 자금압력 완화에 유리하다.

셋째, 징수와 환급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징수 부문이 징수를 관리할 뿐 아니라 환급도 관리하여 기업정황을 비교적 이해하고 이로 인하여 정책 집행의 통일이 용이하고 또한 부정환급(輸出騙稅)을 방지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

이에 비하여 先徵後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징세와 환급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환급기관이 수출기업의 생산경영 상황과 수출재화의 납세정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적시에 장악하기 어렵고, 적게 징수하고 많이 환급하는 현상, 징수하지 않고 먼저 환급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둘째, 실제 환급액이 방대한 경우 대량의 현금이 빠져나가 수출 騙稅의 유발이 용이하다. 얼마전의 奧東 騙稅事件은 이러한 先徵後退의 결함을 이용한 것이다.

셋째, 기업의 자금부담과 이자지출이 증가하여 수출생산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

4) 생산기업의 “免, 抵, 退” 계산방법

(1) 당기에 납부할 세액의 계산

당기 납부할 세액 = 당기 내수재화의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 당기 면세 불능 및 공제 불능 세액)

62) 재경보, 2002. 1. 30.

(2) 免·抵·退稅額의 계산

免·抵·退稅額 = 수출화물의 본선인도가격 × 외환의 인민폐시장가격 × 수출재화 환급률 - 免·抵·退稅額抵減額

(3) 당기 환급할 세액과 免·抵·退稅額의 계산

① 당기 기말 미공제액(當期期末未留抵稅額) ≤ 당기 免·抵·退稅額이면,

당기 환급할 세액(當期應退稅額) = 당기 기말 미공제 세액

당기 免·抵稅額 = 당기 免·抵·退稅額 - 당기 환급세액

② 당기 기말 미공제액 > 당기 免·抵·退稅額이면,

당기 환급할 세액 = 당기 免·抵·退稅額

당기 免·抵세액 = 0

당기 기말 미공제세액은 당기 《增值稅納稅申報表》상의 “기말 미공제 세액(期末留抵稅額)”으로 한다.

(4) 면세 및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의 계산

면세 및 공제할 수 없는 세액 = 수출 재화의 본선인도 가격 × 외환의 인민폐 시장가격 × (수출재화의 세율 - 수출화물 환급률) - 면세 및 공제할 수 없는 세액 抵減額

免抵退稅 면세 및 공제할 수 없는 세액 低減額 = 면세구입 원재료 가격 × 수출재화의 세율 - 수출화물 환급률)

5) 免·抵·退稅 처리의 기본절차 및 필요한 증빙

(1) 기본절차

생산기업이 재화를 수출하고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상 매출로 처리한 후, 增值稅 법정납세기간내 주관국세기관에 增值稅 納稅와 免·抵稅 신고를 하며, 증치세납세신고를 완료한 후 매월15일 이전(휴일이면 순연)에 다시 주관세무기관에 “免·抵·退”稅 신고를 한다. 세무기관은 생산기업이 신고한 免·抵·退稅 자료에 대하여 심사·심사비준·청산·검사를 실시한다.

(2) 필요한 증빙

주관국세기관에의 증치세 납세와 免·抵·退稅 신고시 다음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① 증치세납세신고서(增值稅納稅申報表)
- ② 退稅 부문(환급 부문) 이 확인한 生産企業出口貨物免·抵·退申報匯總表
- ③ 국세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증빙

退稅 부문(환급 부문)에의 免·抵·退稅 신고시 다음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① 生産企業出口貨物免·抵·退申報匯總表
- ② 生産企業出口貨物免·抵·退申報明細表
- ③ 징세 부문이 심사·확인 증치세납세신고서(增值稅納稅申報表)
- ④ 進料加工의 경우 일부 서류 추가 작성
- ⑤ 정장 바인딩(裝訂成冊)한 報表와 원시증빙

생산기업이 통관수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退稅 관련 환급과 면세 관련 세무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주관국세기관에 “免·抵·退”稅 신고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내수재화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이미 증치세를 징수한 재화에 대하여 생산기업이 관련 수출환급(면세)증빙을 갖춘 경우 세액환급정산기간(出口退稅清算期間) 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산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기간 내에 신고하였으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다.

4. 最近의 輸出換級稅率의 調定 調治

중국정부는 2003년 10월 13일 輸出換級律의 조정 조치([재세 <2003> 222호])를 발표하여 증치세 환급률을 2004년 1월부터 평균 15%에서 12%로, 3%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래 재화는 기존 수출환급률을 유지하고 불변한다.

- (1) 현행 환급률이 5%와 13%인 농산물

- (2) 현행 환급세율이 13%인 농산물 가공품(본 통지 「다」 및 「라」의 규정 제외)
- (3) 현행 조세정책규정상 증치세 징수율이 17%이고 환급률이 13%인 재화(본 통지 「다」 및 「라」의 규정은 제외)

(4) 선박, 자동차 및 그 관련 주요부품, 항공기와 우주선 및 그 부분품, 수치제어식 가공작기계, 인쇄회로, 철도용기관차 등현행 환급률이 17%인 재화

2) 밀가루, 옥수수가루, 오리의 절단육, 토끼의 절단육 등의 환급률은 5%에서 13%로 상향조정한다.

3) 원유, 목재, 펄프지, 산양털, 뱀장어 치어(鰻魚苗), 희토금속, 인광석, 천연흑연 등의 수출환급정책은 취소한다. 그 중소비세과세대상인 재화에 대하여는 사용하게 소비세수출환급(면)세 정책을 취소한다.

4) 아래 재화의 환급률은 하향조정한다.

(1) 디젤유(HS번호 27101110), 아연 快(HS번호7901)의 환급률을 11%로 하향조정한다.

(2) 알루미늄괴, 황린 및 기타 인, 니켈 혼, 철합금, 몰리브덴광 및 그 정광 등의 환급률을 8%로 하향조정한다.

(3) 코크스, 반성코크스, 강결점성 코크스용탄, 소결한 마그네시아, 형석, 활석, 동석 등의 환급률은 5%로 하향조정한다.

(4) 「가」, 「나」, 「다」 및 본 조항 제(1)관, 제(3)관에 규정한 재화를 제외하고 현행환급률이 17%와 15%인 재화에 대하여는 환급률을 일률적으로 13% 하향조정한다. 현행 과세율과 환급률이 모두 13%인 재화는 일률적으로 11%로 하향조정한다.

5) 수출기업이 2003년 10월15일 전에 이미 대외로 체결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본 통지 「라」 제(4)관 범위에 속하는 부대설비 (수출가치가 200불 이상인 세

트 설비) 및 대형기계전자제품(한 대당 가치가 100만불 이상인 기계전자제품)의 수출계약에 속하며, 계약상 규정한 수출일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일 경우, 반드시 2003년 11월 15일 전에 수출계약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여 관할환급세무기관에 등록·비치해야 하며, 省국가세무국에서 심사 후, 2003년 11월 30일 전에 조건에 부합되는 수출계약 및 관련 자료를 국가세무총국에 제출하고, 국가세무총국은 재정부의 심사승인을 얻은 후, 현지 국가세무국에서 조정 전의 환급률에 따라 환급한다. 2003년 11월 15일 전에 등록·비치하지 않은 세트설비와 대형기계 전자제품은 일률적으로 조정된 후 환급세율에 따라 수출환급을 취급해야 한다.

6) 각 지역 재정 및 세무 부문은 성실하게 본 통지의 규정을 익혀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엄격하게 본 통지의 관련정책을 관철하며, 법에 의거하여 환급하고,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확실하게 수호하며, 동시에 상무·세관·외환 및 기업주관 부문과 면밀하게 협력하여 수출업무를 보다 잘 수행해야 한다.

7) 2004년 1월 1일부터 어떤 기업 어떤 무역방식으로 재화를 수출하더라도 본 통지에 규정한 환급률에 따라 집행한다. 구체집행일자는 수출재화 통관신고서상 세관에서 명기한 離境(관세선을 떠남)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5. 增值稅의 部分的인 還給問題에 대한 解決方案

조세는 정부세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민간의 자산구성, 민간의 경제행위 그리고 부와 소득의 분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정책은 중요시되고 있다.

중국에서 조세정책이란 국가의 정치, 경제 및 사회발전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중시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조세정책은 중시되고 있다.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1994년에 세계개혁을 실시했으며, 동 개혁은 증치세를 기간세목으로 하는 개혁이었

다. 중국정부는 세수의 방어 내지는 증수의 목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증치세의 부분환급을 실시하고 있으며,⁶³⁾ 행정법규인 辦法 및 通知의 형태로 위임입법 되어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재정부(財稅字)와 국가세무총국(國稅發)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增值稅의 부분환급으로 인해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지고 수출산업의 육성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며, 부분환급은 세부담 증가로 연결되어 국가이익과 대외개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增值稅의 부분환급은 세제개혁의 지도이념이며 조세정책의 중요한 목표인 공평한 세부담, 세법의 통일 및 세제의 간소화 등을 지향하는 중국의 조세정책과 상치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국정책당국의 조세에 대한 시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즉 조세정책이란 국가의지의 산물이며, 조세란 국가권익의 중요한 표현인 동시에 과세여부는 당해 국가의 통치행위의 범주(課稅主權의 行使)에 속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조세제도에 대하여 그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순수한 연구의 필요성과 대중국정책의 수립 시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세에 대한 중국 정책당국의 위와 같은 시각을 고려한다면 수출품에 대한 증치세의 부분환급을 주어진 상황으로 보고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기업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환급률 설정 및 조정 등 제도적 사항은 중국의 과세주권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국·외투기업과 중국 내국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문제를 제기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다. 그러나 증치세 본래의 제도적 취지인 소비지 과세원칙을 감안할 경우 전액환급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각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에 의하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GATT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63) 특히 최근에는 지속적인 재정적자에 따른 예산부족과 지방정부의 이기주의에 따라 지방기업들의 세금포탈을 묵인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 등도 증치세 부분환급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의하여 수출재화에 대한 零稅率을 적용하고 있음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제도상 환급해야 할 금액의 지연환급 또는 미환급에 대하여는 중국정부의 방침과 달리 집행되는 부분이므로 중국정부의 방침을 믿은 우리 기업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중국정부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환급률 인하 및 상향조정 등 제도적 사항은 중국의 과세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한국 기업은 대중국 투자계획을 재고하거나 추가확장계획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낮은 납세의식에 따른 불성실 신고, 세원관리 미비 및 미비된 세무행정 등을 감안하면 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증치세의 부분환급으로 인해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이를 계기로 중국내수시장 개척의 기회로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2003년 10월의 수출환급률의 하향조정 조치([재세 <2003> 222호]로 인해서 수출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증치세 평균 환급률을 3%포인트 낮추는 것은 원가를 3%포인트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와 수출을 감소시키며, 수출물량의 내수전환으로 인해 내수시장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이므로, 내수시장에 진출했거나 개척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곱째, 2003년 10월의 수출환급률의 하향조정 조치에 의해 품목별로 환급률이 다르게 하향조정되었지만, 첨단산업은 환급률의 변화가 없었다(우대조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한국기업은 비용 우위보다는 차별화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술, 브랜드 등에서 차별화 된 제품(고부가가치 제품)을 중국 내에서 생산할 필요가 있으며, 내수시장도 동시에 공략할 필요가 있다.

제2절 各種 準租稅의 問題와 解決方案

1. 收費(준조세)의 의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칭하는 준조세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에는 收費가 있다. 收費는 당해 기업의 기업활동 과정에서 순수한 생산비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가운데 부담하는 부분으로서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중 투자기업의 경영상 애로의 하나가 되고 있다.

收費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의 행정 주체 또는 양 정부로부터 행정 권한을 위임받은 부문 또는 단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이며, 각종 부담금·수수료·사용료·기부금 또는 기금 등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칭하는 準租稅의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그 범위는 준조세보다 넓다.

收費에 대한 현 단계에서의 인식을 보면, 收費는 사회·경제현상으로서 고금 및 국내·외에 모두 있는 현상으로서, 예를 들어 西周시대 孔子생존 시에 그가 학교를 열어 학생을 가르치면서 말린 고기(肉干) 10조각(條)을 학비로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明代에도 『索路費』, 『索紙包』, 『買差錢』 등 10 수종의 『公差雜費』를 수취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도 收費現象은 가격현상과 동일하게 보편화되어 있다.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이래 사장경제가 발달하고 정부 관리기능이 전환되면서 收費항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현재까지 재정부에 파악된 것만도 350여 가지가 된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법률 또는 규정에 없거나 상치되는 지방 자체의 收費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은 허가 유무를 불문하고 그 징수액이 통계에 나타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 종목수가 파악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收費의 빈번한 부과로 인하여 대중 투자기업은 기업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현실이다.

<그림 4-1>에 의하면, 收費은 가격과 조세의 사이에 위치하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공통집합(交集)』과 일치한다. 縱으로 보면, 收費의 3가지 형태 중에서 경영성 收費가 가격의 성질에 가깝고 조세의 성질과는 거리가 멀며, 행정성 收費는 조세의 성질에 가깝고 가격의 성질과는 거리가 멀며, 사업성 收費는 양자의 중간에 위치한다. 橫으로 보면, 좌에서 우로 가면서 어떤 특징이 점차 약해지고 동시에 그와 대립관계에 있는 특징은 점차 강해지며, 이것이 소멸되면 저것이 성장하는 형세를 나타낸다. 즉 收費의 하나하나 특성의 형성은 늘 가격과 조세의 쌍방 속성을 갖추고 있으며, 단지 같지 않은 收費 형태 중에서 가격 또는 조세특성의 반영 정도가 다른 것에 불과할 뿐이다. 앞에서 서술한 價格, 收費 및 租稅가 형성하는 특징의 차이는 정부의 관여 정도의 차이와 규제 강도의 차이를 반영한다.

收費를 종합적으로 정의하자. 收費의 속성에서 보면, 準公共財(quasi-public goods)의 가격이다. 즉 부분적인 공공성과 부분적인 배타성을 가진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이며, 이러한 가격 형식은 사회공공기구의 규제를 받는 무형의 產品의 가격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동시에 또 국가 재정을 보충하는 보충세(繼補稅)로 표현한다. 收費의 범주에서 보면, 收費란 가격과 조세의 공통집합(交集)이며, 가격과 조세 권역의 확장을 통하여 일반화되었으며, 가격과 조세에 이중 특징을 가지게 되었으며, 양자의 특징에 의하여 다른 정도로 혼합되었으며, 경영성 收費, 사업성 收費 및 행정성 收費라는 3가지 형태로 형성되었다.

2) 收費의 機能

收費의 대표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收費는 부분적인 공공성과 부분적인 배타성을 가진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이므로 收費는 產品의 분배에 일종의 질서를 부여해서 경제적으로 유한한 產品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수단 하나가 된다.⁶⁵⁾

65) 이와 같은 측면은 사용자가격(user price)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 적용되는 것과 유사하다.

둘째, 收費은 가격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公共物品(공공재) 사용시의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收費은 가격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공급자가 특정 물품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收費은 수익자부담원칙의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공공서비스의 원가를 공평하게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된다.

종합하면, 收費은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시장성이 있는 준공공재는 특정 수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익자부담원칙 誰受益誰負擔의原則에 의해서 일정 가액의 收費을 부과대상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는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현단계에서의 중국 학계 및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3) 收費의 現況

『收費의 紊亂』은 이미 중국의 큰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된 상태이다. 건국초기에는 收費 항목이 비교적 적어서 『對外貿易仲裁費』, 『內河航運養護費』, 『企業登記費』, 『婚姻證書工本費』, 『農牧業稅附加』, 『工商稅附加』, 『醫療服務收費』 및 『中小學雜費』 등 소수의 항목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시장경제의 발전과 정부 관리기능의 전환에 따라 중국의 收費 종류가 급속히 증가되고 收費의 수입 규모가 나날이 팽창하고 있다. 1992년에 전국적으로 행정성 收費 및 사업성 收費을 정리한 결과에 대한 유관 부문의 통계에 의하면, 收費金額이 670億元(人民幣)에 달해서⁶⁶⁾ 1992년 재정수입(3,483億元)의 19.2%를 차지했고, 동 연도 예산외자금⁶⁷⁾ 수입(3,855億元)의 17.4%를 차지했다. 경영성 收費을 포함한다면 동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收費의 전체적인 수입 규모를 밝혀주는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위와 같은 부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收費가 증가 추세에 있었던 예산외자금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정규모가 팽창하고 있는 점을 고려

66) 趙振東·張念瑜, 「收費理論與收費管理」, 中國物價出版社, 1995, p.554.

67)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재량으로 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한다면 收費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것이며, 그 규모도 1992의 유관 부문 통계 수치보다도 클 것이며 재정 및 예산의 자금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 클 것으로 유추된다.

4) 收費의 種類

『收費란 가격과 조세의 공통집합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종류에는 행정성 收費, 사업성 收費 및 경영성 收費가 있다.

행정성 收費란 국가기관 및 동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단위가 국가의 관리 기능을 행사하면서 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실질은 국가의지 및 권위를 경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⁶⁸⁾ 따라서 행정성 收費는 법령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며,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省급 이상의 인민대표대회 (또는 全人大상무위원회)에서 반포한 각종 법률 또는 省급 이상의 인민정부에서 반포한 각종 행정법규가 반드시 收費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행정성 收費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證照費』, 『單簿費』, 『手續登記費』, 『管理費』, 『集資收費』 및 『徵罰收費』의 6종류가 있다.⁶⁹⁾

『證照費』란 收費 부과 주체가 부과대상에게 각종 허가증(工業產品生產許可證, 廣告經營許可證 등) 및 증명서(居民身分證, 貨物進口證明書, 貨物出口證明書 등)를 발급하면서 부과하는 것이다.

『單簿費』란 收費 부과 주체가 기재하지 않은 증빙서류(單據), 각종 서식(表格), 보고서(報表) 및 번호표(号牌)를 제공하면서 부과하는 收費 이다. 예를 들면, 車輛管理各種登記表, 發表工本費 및 進口貨物報關單費 등이 있다.

『手續登記費』란 收費 부과 주체가 행정적인 심사·허가 수속 및 등기·등록시 부과하는 收費이다. 예를 들면, 退稅手續費, 招工手續費, 企業登記費, 公司注冊登記費 및 商標注冊費 등이 있다.

68) 국가의 주권행위를 이용함으로써 직접적인 이익을 향수한 자에 대하여 그 대가고서 징수하는 手數料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69)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收費의 명칭을 원어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管理費』란 收費 부과 주체가 업종(직업)관리와 자원관리를 하면서 부과하는 收費로서 行業管理費와 資源管理費가 있다. 行業管理費에는 個體工商業戶管理費, 集體企業管理費, 鄉鎮企業管理費 등이 있고, 資源管理費에는 土地管理費, 礦產資源 補償費 등이 있다.

『集體收費』란 收費부과 주체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 또는 이익을 받는 특정 대상에 부과하는 收費이다. 예를 들면, 港口建設費, 公路養路費, 重點能源交通建設基金 등이 있다.

『懲罰收費』란 收費 부과 주체가 법규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收費이다. 예를 들면, 交通事故處理費 및 각종 벌금 등이 있다

事業性 收費란 비영리성 국가사업단위 및 유사한 기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收費로서, 그 실질은 서비스성 노동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이다.

사업성 收費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前續型服務收費』, 『檢測型服務收費』, 『傳授型收費』, 『代理型服務收費』, 『資料設施型服務收費』, 및 『醫療保健型服務收費』가 있다.

『前續型服務收費』란 收費 부과 주체가 국가 관리 기관의 위탁을 받아서 검사·측정 장비를 운영하면서 收費 부과대상에 검사 및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收費이다. 예를 들면, 壓力容器的 검사, 약품의 검사 등의 검사비가 있다.

『傳授型收費』란 收費부과 주체가 收費 부과대상에 지식 및 기능을 전수하고 받는 收費이다. 예를 들면, 학비(高, 中, 初等教育), 培訓費 (양성비), 諮詢費(자문비) 등이 있다.

『代理型服務收費』란 收費 부과 주체가 收費 부과대상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모종의 활동을 진행하고 받은 보수성 收費를 말한다. 예를 들면, 專利(특허)代理費用, 변호사·회계사·회계검사사무소가 받는 收費가 있다.

『資料設施型服務收費』란 收費 부과 주체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설비나 전문기술 자료 등을 收費 부과대상에 제공하고서 받는 收費를 말한다. 정각

적으로 제공하는 天氣豫報情報收費, 古籍文獻資料收費 등의 資料收費 및 寄宿生住宿費, 水電費, 병원입원비 등의 施設收費가 있다.

『醫療保健型服務收費』란 收費 부과 주체가 收費 부과대상을 위해서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서 받는 收費을 말한다. 出診費, 治療費, 등의 醫療收費 및 健康檢查費, 豫防接種勞務費 등의 保健收費가 있다.

경영성 收費란 영리성 단위가 사회에 상품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공공기구의 규제아래 부과하는 收費을 말하며, 그 실질은 서비스성 노동에 대한 전액 보상이다. 경영성 收費를 업종에 따라 분류하면, 『交通運輸收費』, 『郵電資費』, 『電力收費』, 『房地產收費』, 『城市公用事業收費』, 『居民生活服務收費』, 『旅遊收費』, 『文化娛樂收費』, 『廣告收費』, 『工程技術服務收費』, 『安裝修理收費』, 『倉儲收費』, 『金融保險收費』 및 『仲介經紀收費』가 있다.

3. 現 段階에서의 收費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1) 收費의 問題點

收費의 관리 중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현단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收費의 혼란문제』이다. 『收費의 과다문제』란 收費 징수 주체의 과다, 收費 항목의 과다 및 收費 징수 단계의 과다를 말한다. 『收費의 혼란문제』란 收費 징수 부문의 혼란, 收費 항목의 혼란, 收費 표준의 혼란, 收費 행위의 혼란 및 收費 용도의 혼란을 말한다.

먼저 收費의 과다문제를 보자.

① 收費 징수 주체의 과다

중국에서 조세징수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는 세무와 관세 두 기관이 있는 데 비해서 국민과 법인에 대해서 收費을 징수하는 기관은 많아서 행정권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각종 명목으로 收費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서 江蘇省 蘇州市 관할 농민의 收費항목은 56개에 달하고 징수 부문이 20개에 달하며,⁷⁰⁾ 上海

某기업은 강제로 가입된 협회가 120여 개 되며, 1년에 회비로 약 11万元(人民幣)가량을 지출하며, 동 액수에는 매년 협회 회의 참석 시에 지출하는 자료비 및 출장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⁷¹⁾ 경상성 收費을 관할하는 대표적인 기관에는 工商局, 公安局, 城建局, 衛生局, 環保局, 交通局, 防疫局, 市容觀察隊, 公安派出所, 公安刑警大隊, 城管隊, 環保檢察隊, 居委會, 文化局, 保密局, 煙草局, 商業局, 標準計量局 등이 있다.⁷²⁾

② 收費 항목이 과다

收費을 징수하는 기관이 많음과 더불어 이들이 징수하는 항목도 많다. 예를 들면, 江蘇省 蘇州市 관할 농민의 收費 항목은 56개에 달하며, 江西省 撫州地區의 개인상공업자와 私營企業이 납부해야 하는 주요 收費에는 工商管理費, 施設租賃費, 各種 証照工本費, 各種管理費, 各種登記註冊手續費, 治安費, 保安費, 聯防費, 茶水費, 占道費, 衛生費, 體驗費, 쓰레기 청소비, 쓰레기 대리 운반비, 쓰레기 처치비, 排污費, 保密保證金 등이 있다.

③ 收費 징수 단계의 과다

통상적으로 회사·공장 또는 광산을 설립 시에 입안(立項)에서 회계감사까지, 기초건설에서 작업개시까지 날인 받아야 하는 도장의 개수가 최소 10여 개 많게는 100여 개가 되기도 하며, 매년 날인 시에 收費을 납부해야 하는 등 징수 단계가 많다.⁷³⁾ 다음으로 收費의 혼란문제를 보자.

① 收費 징수 부문의 혼란

收費 징수 주체는 분명히 법률적인 제한을 받고, 행정적인 권한 위임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부문과 단위가 자체적으로 항목을 만들어서 收費을 자의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70) 蘇州市 物價局, 「蘇州市涉及農民的行政事業性收費情況調查」, 中國物價, 1993年 第3期.

71) 「經濟參考報」, 1994. 12. 22.

72) 陳濟財, 「對個體私營企業費用負擔情況的調察」, 價格月報, 1993年 第12期.

73) 柏強忠, 「亂收費:盡不完的義務 過不完的關」, 中國財經報, 1995. 9. 10.

② 收費 항목의 혼란

㉑ 자의적인 항목의 창설

광둥성 물가조사국의 조사에 의하면, 성내의 기업이 납부하는 收費項目 중에서 국가와 省정부에서 규정하는 항목이 전체의 1/3 정도이고 나머지 2/3는 지방하급 정부와 해당 부문이 월권을 해서 자의적으로 창설한 것이다.⁷⁴⁾

㉒ 교묘하게 명목 붙이기

武漢市の 조사에 의하면, 1990년 동市の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收費 항목이 103개였으며, 그 중에서 규정에 부합되는 것은 16개 항목(전체의 16.5%)이며, 나머지는 87개 항목(전체의 83.5%)은 교묘하게 명목을 붙여서 부과한 것이다. 예를 들면 不足年齡費, 檔案管理費, 轉學學籍管理費 등이 있다.

③ 收費 標準의 혼란

㉑ 收費 표준을 자의적으로 올리기

광둥성 물가조사국의 조사에 의하면, 국가와 省정부에서 규정한 항목 중 약 1/3이 그 범위가 확대되거나 收費 표준이 상향조정되어 있었다.⁷⁵⁾

㉒ 항목을 세분해서 변칙적으로 收費를 올리기

㉓ 기능을 이전해서 중복 부과하기 등

④ 收費 행위의 혼란

㉑ 중복 징수하기

㉒ 강제징수하기

㉓ 무날인 징수하기 등

⑤ 收費 용도의 혼란

㉑ 현행 행정사업성 收費는 소수의 항목만이 예산내자금으로 관리되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예산외자금으로 관리되고 있다. 예산외자금으로 관리되는 收費資金은 收費 징수 단위의 『小金庫』⁷⁶⁾의 중요 재원이 되고 있다.

74) 劉亞利, 「收費, 不該是出龍猛虎」, 中國財經報, 1996. 4. 2.

75) 劉亞利, 「收費, 不該是出龍猛虎」, 中國財經報, 1996. 4. 2.

2) 收費 問題의 發生原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다양한 收費 문제의 발생원인을 지방정부의 입장 및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파악해보자.

먼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보자.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을 계기로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지방분권화 되면서 예산내 수입이 전체 지방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낮아져서 행정사업성 경비의 공급이 갈수록 어려워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체제 및 정부기구 개혁의 지체로 재정에서 담당해야 하는 행정단위 및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서 재정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악화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앞의 문제점 내지는 어려움을 예산내 자금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따라 收費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외자금이 팽창되기 시작했다. 한편 예산외자금의 팽창은 재정수입의 정상적인 성장을 압박했고, 이는 위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킴에 따라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즉 『행정사업성 경비의 부족 → 각 부문의 자체적인 收費 징수 → 예산외자금 팽창 → 예산내자금수입원 침식 → 예산내 경비 더욱 압박 → 예산외자금 더욱 확대……』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다음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보자. 중국이 비록 1980년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각 부문별 개혁을 추진하면서 재정개혁도 추진해서 세입을 나누는 조치를 취했었지만, 행정 권한은 제대로 나누지 않았다. 즉 개혁을 추진했지만 중앙과 지방의 행정권(事權)과 재정권(財權)의 귀속이 불분명했으며, 이와 같은 분권조치가 행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불분명했다. 한편 중국의 각 지방은 지방세의 입법권과 징수권 심지어 공채발행권도 없음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지방경제건설이 가속화됨에 따라 收費와 기금의 형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76) 일부 부서나 단위에서 공개된 재정이나 회계장부와는 별도로 출납관리를 하는 자금으로서 소위 기관의 비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3) 收費의 問題點으로 인해서 派生되는 問題點

收費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파생된다.

첫째, 내자기업 및 외자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 내·외자기업은 각종 收費의 주요 부과대상으로서 경제의 발달로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收費 부담도 점차 증가되어, 현단계에서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많다.

둘째, 국가의 재정 기반이 침식된다. 중국의 현행 재정체계에 의하면, 재정자금은 예산내자금과 예산외자금으로 구성된다. 비록 1993년에 『會計準則』 및 『財務通則』을 실시하면서, 국유기업의 감가상각기금 및 세후의 사내유보금이 예산외자금의 규모가 감소되었지만, 국가의 재정 기반을 침식하고 있다.

셋째, 분배의 왜곡이 심화된다. 收費 자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분배를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收費 부과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부문 및 단위 포함)의 역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와 같은 분배의 왜곡이 더욱 심화된다. 즉 현실적으로 권한이 강한 행정기관의 收費 항목과 收費 총액은 나날이 증가하는 반면, 권한이 약한 기관의 항목과 총액은 날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收費의 순기능을 왜곡시킴과 더불어 분배의 왜곡도 심화되고 있다.

넷째, 사회 기강이 손상된다. 앞에서 보듯이 收費의 징수에는 조세와 같은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징수대상자의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收費의 중복 징수, 무날인 징수 및 收費가 『小金庫』의 중요재원이 될 뿐만 아니라 사용 용도도 불투명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4) 收費 問題의 改善方案

중국정부는 1994년의 세제개혁 시에 상당수의 收費를 세제로 흡수하면서 조세 이외의 부담금은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또한 1995년 10월에 중국 재정부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없는 각종 收費를 유형별로 열거하고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등 收費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7년에도 『외자기업에 부과하는 행정업무성 收費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공포해서 재정부와 국가계획위원회(현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인가 및 등록을 거치지 않은 징수항목은 亂收費로서 무효이며, 收費 징수에 위법이 인정되는 경우 외자기업은 省, 자치구, 직할시 정부 또는 중앙의 재정부 및 국가계획위원회에 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지방정부(省, 自治區 등)에서 예상치 못한 收費을 빈번하게 부과하고 있어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되고 있다.

현단계에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3개로 요약된다.

첫째,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만 징수해야 하는 收費는 全國人民大會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거하여 징수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징수대상자에게도 비합법적인 收費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거부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합리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고 응당 징수해야 하는 收費는 계속적으로 收費의 형태를 취하되, 관리 방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 단위도 정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징수된 收費는 법에 의해서 예산과 유사한 통제를 받도록 조치하고, 통일된 양식의 결산을 하도록 하고, 결산 시에는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합리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收費 중 상당부분은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教育費附加, 農村教育事業附加 및 義務教育費 중의 일부분 등은 교육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노동, 민정, 인사 및 위생 등에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험기금을 사회보장세로 통일함이 바람직하며, 토지관리 부문에서 징수하는 일단의 비용은 토지관련세에 포함시킴이 합리적일 것이다.

4. 外商投資企業의 收費問題 解決方案

국토의 면적이 한국의 44배, 인구는 27배, 50여 민족으로 구성된 거대한 중국을 하나의 통일된 법전으로 통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경제가 발달한 동부와 서부는 자연 및 사회 환경 등이 상이하므로 이로 인하여 다양한 경제현상이 발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제현상을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획일적인 법률 규율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다양한 경제현상에 맞추어서 행정규정 등을 이용한 收費을 부과하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收費은 주로 비공개성 문건인 내부분건이나 내규형태로 되어 있어서 대중 투자기업의 접근이 쉽지 않다.

이처럼 중국의 자연적인 여건 및 사회·경제적인 여건, 收費 문제의 발생 원인, 收費에 대한 정부의 각종 조치, 학계의 입장 그리고 收費은 사회·경제현상으로서 古今 및 국내·외에 모두 있는 현상이라는 현단계에서의 인식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상당 기간 동안 收費은 내·외자기업 모두에 계속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서 한국 기업이 대중투자 시에는 비용으로 처리됨에 따라 원가상승 요인이 되고 자금운용에 압박과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收費 부과에 대해서 현지 내수시장의 진입을 도모하는 시장추구형의 대기업은 부담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기업에는 어려운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중국에 투자한 대부분의 한국중소기업은 국내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진출한 생산효율 추구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收費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收費을 부과하는 중국 당국은 징수자의 입장이고, 부담하는 대중 투자기업은 납부자의 입장이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투자 준비 단계에서부터 收費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투자 준비 단계에서 투자 예정 지역의 선정, 투자방식·형태의 결정, 합자·합작기업의 파트너 선정 등과 더불어 투자 예정 지역의 收費의 통류 및 실제 부담 정도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미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收費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원가에 반영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收費에 대해서는 省·자치구·직할시 정부 또는 중앙의 재정부 및 국가계획위원회에 심사 청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관련 재정제도가 미확립된 국가에서는 사용자 가격 등의 성격을 지닌 收費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음을 인

정한다면 정부간 협약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는 주로 중국정부가 말하는 『亂收費』가 협약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제3절 移轉價格稅制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1. 이전가격(轉讓定價)세제의 意義

이전가격세제란 관련기업(특수관계기업)간 국제거래에 있어서 가격을 독립적인 제3자간의 거래가액보다 낮거나 높게 책정함으로써 소득을 당해 관련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그 정상가격에 따라 산정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전 가격세제는 관련기업간 거래의 합리성을 확보하여 조세수입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련기업간 거래가 독립기업간 거래조건과 부합하는지의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인에게 있다. 따라서 기업은 관련기업간 업무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시에 이전가격의 정상성 또는 합리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가격과세는 과세기술상 매우 복잡하며, 조사기간이 장기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일반적으로 과세액도 큰 것이 특징이다.

2. 中國의 移轉價格課稅 現況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전가격과세에 관해서 『中華人民共和國租稅徵收管理法』, 『外商投資企業과 外國企業所得稅法』 및 『關聯企業間業務往來稅務管理規程』 등 관련규정을 가지고 있다.

『關聯企業間業務往來稅務管理規程』에서 관련기업의 정의, 관련 기업간 거래의 인정, 세무조사대상의 선택, 이전가격결정방법, 기업의 입증책임, 이전가격의 사전

조정, 이의 및 소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세무총국에 涉外(分)局 등 이전가격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3. 關聯企業(특수관계기업)의 範圍

관련기업이란 해당 외상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이하 “기업”이라 약칭)과 다른 회사·기업·기타 경제조직(이하 “다른 기업”으로 약칭)이 다음의 관계를 갖는 회사·기업 및 기타의 경제조직을 말한다.

- ㉠ 상호간 직접·간접적으로 타방의 주식지분 2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 거래당사자 쌍방이 모두 제3자에게 소유되어 있거나 또는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각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일방기업과 타방기업간에 대차자금(차입금과 대출금)이 기업자기자본금(기업이 아무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기보유자금)의 50% 이상을 점하거나 일방기업의 차입자금 총액의 10% 이상을 타방기업이 보증(담보)하는 경우
- ㉣ 일방기업의 이사 등 고급관리인원의 반 이상 또는 한 명의 상근이사를 타방기업에서 임명·파견하는 경우
- ㉤ 타방기업에서 생산경영을 위해 구입한 원자재, 부품 등(가격 및 거래조건 등 포함)을 제공해야만 일방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
- ㉥ 일방기업의 생산경영을 위해 구입한 원자재, 부품 등(가격 및 거래조건 등 포함)을 타방기업이 통제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 ㉦ 일방기업이 생산한 제품 또는 상품의 매출(가격 및 거래조건 등 포함)을 타방기업이 통제하는 경우
- ㉧ 가족, 친족관계 등을 포함하여 일방기업의 생산경영·거래에 대해 실제로 통제하는 기타 이익상 관련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기업이란 서로 독립된 기업실체를 의미하므로, 본점(총기구)이 지점(분기구)에 관리비용을 배분하더라도 이는 관련기업간 거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4. 關聯企業間 業務去來의 類型

주요 관련기업간 업무거래의 유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 건축물, 교통공구, 기계설비, 공구, 상품(생산품) 등 유형자산의 매매, 이전(양도)과 사용

㉡ 토지사용권, 출판권, 상표, 상호, 특허와 전용기술 등 특허권, 공산품의 외관설계 또는 실용신안 등 공업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소유권 이전과 사용권의 제공

㉢ 각종 장·단기 자금의 대여와 담보, 유가증권의 매매 및 각종 이자가 계산되는 미지급 및 연불지급채무 등 자금유통

㉣ 시장조사, 판매, 관리, 행정사무, 기술서비스, 정비, 설계, 자문, 대리, 과학연구, 법률, 회계사무 등 용역 제공

일반기업과 타방기업이 관련 기업일 경우 납세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관련기업간 거래상황을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5. 移轉價格調查

주요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의 생산·경영관리 결정권이 관련기업의 통제를 받는 기업

㉡ 관련기업과의 업무 거래 액수가 비교적 큰 기업

㉢ 장기적인 결손기업(연속 2년 이상 결손인 경우)

㉣ 장기적으로 이익 또는 손실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규모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기업

㉤ 이윤과 결손을 격년으로 실현하는 기업

㉥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관련기업과 업무거래가 발생하는 기업

㉦ 기업의 이익수준이 동 업종 기업의 이익수준보다 낮은 기업

㉧ 기업의 이익수준이 그룹 내의 다른 회사보다 낮은 기업

- ① 관련기업에 지급한 각종이 비용이 불합리한 기업
- ② 법정감면기간 만료시, 이윤이 급격히 하락하여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기업

6. 關聯企業의 稅務管理

납세연도중 기업과 관련기업간 업무거래가 있을 경우, 현지세무기관에 연간소득세신고서 제출시 『외상투자기업·외국기업과 관련기업간 업무왕래정황 연도신보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지세무기관이 기업과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상황을 조사할 때, 관련 거래가격·비용기준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류제출 요구 시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업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관련 거래 가격·비용기준 등 자료 제출을 거절하는 경우 관할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수징수관리법』에 따라 벌금의 부과가 가능하다.

관할세무기관이 기업 이전가격에 대해 조정하는 경우 조정금액·성격을 서면으로 피조정기업에 통지한다.

이전가격에 대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조사 해당 납세연도의 과세수입 또는 과세소득에 한정된다. 조사·조정은 일반적으로 납세연도의 다음연도로부터 3년내에 실시한다. 만약 조정의 대상이 이전연도의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최장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업이전가격조정 과세소득에 대해 기업이 상응한 재무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측이 관련관계가 없이 취득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배당으로 간주한다. 동 배당은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의 소득세면세혜택을 향수하지 못한다. 또한 관련측이 취득한 소득이 이자, 특허권사용료인 경우에는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를 조정하지 못한다.

기업이 이전가격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세액과 체납금을 납부한 후, 『외상투

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復議)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신청기간 내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제공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세무기관은 재심을 거부할 수 있다.

기업이전가격에 대한 조정이 조세협정조항집행과 관련될 경우 조세협정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7. 移轉價格에 대한 外商投資企業의 留意事項

최근까지 국가세무총국은 국가세무총국의 인력부족과 이전가격의 합리성을 검증할 수단의 부족과 조세우대정책 등으로 이전가격조정에 의한 세수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이전가격문제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외상투자기업의 감면기간이 경과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이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른 관련자 거래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고, 최근 외자기업 소득세의 세수가 들어와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요 세원의 하나로 성장함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전가격조정에 대한 과세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투자기업 중 상당수의 진출기업은 국내의 모기업(관련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당해 거래는 모두 이전가격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관련기업과 거래에 있어 특별한 이유 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경우 이전가격의 의심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기업간 거래가 독립기업간 거래조건과 부합하는지의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인에게 있다. 따라서 기업은 관련기업간 업무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시에 이전가격의 정상성 또는 합리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상가격과 차이가 많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가 확실해야 하며, 조사를 받는 경우 이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은 매년 주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대상기업의 약30% 이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가격정보 및 관련기업간 업무왕래 조사자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세무국에서 이전가격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투자기업 특히 국내의 모기업(관련기업)과 거래를 하는 진출기업은 이전가격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할 시점이다.

제5장 要約 및 結論

지난 20여 년간 중국경제는 세계최고의 성장률을 시현해서 2002년 기준으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실질GDP는 세계6위, 무역액은 수출이 5위, 수입이 6위, FDI(실행기준)가 세계1위를 기록해서 세계 경제 성장에의 기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향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10여 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밀접한 경제관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역면에서 중국은 1996년부터 한국의 3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고, 2003년 상반기에 미국을 추월해서 제1위의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은 중국의 대외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동조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중국 투자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2002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시장의 잠재력, 지리적 근접성과 유사한 문화적 배경, 경제발전단계 및 부존자원의 차이로 인한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 등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경제체제개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1994년에 세계개혁을 단행하였으며, 동 세계개혁으로 세계의 간소화, 구조의 합리화, 세부담 공평의 진전, 무분별한 감면세 억제, 재정수입의 조달, 거시경제정책의 강화 등을 이룩하였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국제적인 조세 관례 및 기준에 근접하는 개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비록 1994년의 세계개혁이 위와 같이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새로운 세계의 실시 후 국가는 사회·경제의 발전 및 변화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시행중에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계속하고 있지만, 중국세계의

전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모순과 문제가 많이 존재한다. 첫째, 세제구조 및 세부담 구조가 국민경제구조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현행 세제가 아직까지 합리성이 부족하고 셋째, 입법과 집행, 집행과 사법, 정책과 행정의 관계가 아직 순조롭지 못하고 상호 독립 및 상호견제의 메커니즘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넷째, 징수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 및 감독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으며, 월권적인 감면과 지방정부의 간섭현상이 아직 두절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중요한 문제점이다. 따라서 향후의 세제개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뒷받침, WTO규정 준수, 거시조절능력 강화 요구에 따른 세법의 통일, 세부담의 공평, 세제의 간소화, 세원의 확대, 세율의 조정, 새로운 세목의 합리적인 징수, 과도한 조세우대정책의 점진적인 폐지 반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중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중국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조세제도가 투자 준비단계에서 기업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조세제도는 기업활동의 외부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한·중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중국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활동의 중요한 외부환경으로서 조세제도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조세제도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중 투자기업에 하나의 애로 사항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조세제도 및 외상투자기업의 소득세제를 분석했으며, 나아가서는 외상투자기업이 겪는 조세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 경쟁력이나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한 조그만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적 상황 하에서 추진되는 조세정책의 역할 및 시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조세는 정부세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민간의 자산구성, 민간의 경제행위

그리고 부와 소득의 분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정책은 중요시되고 있다. 중국에서 조세정책이란 국가의 정치, 경제 및 사회발전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중시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조세정책은 중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이 1994년의 세계개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바 있다. 또한 중국 정책 당국은 조세정책이란 국가의지의 산물이며, 조세란 국가 권익의 중요한 표현인 동시에 과세여부는 당해 국가의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책당국의 이러한 시각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관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중국의 조세정책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향후의 세계개혁에 대비해야 한다. 이미 학자들과 정책당국간에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 조세의 소득 재분배기능 강화, WTO 기본원칙과의 조화를 이루는 세제, 서부개발을 지원하는 조세정책, 조세행정의 강화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조세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향후 세계개혁은 주로, 법인 세율과 개인 소득 세율의 인하 및 세원(과세베이스)의 확대, 이원화된 법인 세제의 통합, WTO 원칙에 따른 세제의 투명도 제고 및 법에 의해 공개적인 조세행정,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한 상속·증여세제의 도입 및 재산세제·개인소득세제의 강화, 서부개발 및 설비투자 장려를 위한 증치세의 과세유형 전환,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세의 도입,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세의 도입, 조세징수업무의 전반적인 전산화 추진을 통한 조세행정의 지속적인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혹은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세계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의 조세정보에 대한 수집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세우대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초창기에는 연해지역의 경제특구, 개방구 등에 대해서 조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우대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IT 및 생명공학 등 하이테크 산업, 인프라시설분야 등 업종(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넷째, 증치세 부분환급제도의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정책 당국은 조세정책이란 국가의지의 산물이며, 조세란 국가 권익의 중요한 표현인 동시에 과세 여부는 당해 국가의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즉 과세주권 행사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정책당국의 위와 같은 시각을 고려한다면 수출품에 대한 증치세의 부분환급을 주어진 상황으로 보고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기업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① 환급률 설정 및 조정 등 제도적 사항은 중국의 과세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국·외투기업과 중국 내국기업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문제를 제기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증치세 본래의 제도적 취지인 소비지 과세원칙을 감안할 경우전액 환급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② 제도상 환급해야 할 금액의 지연환급 또는 미환급에 대하여는 중국정부의 방침과 달리 집행되는 부분이므로 중국정부의 방침을 믿은 외상투자기업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중국정부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③ 환급률 인하 및 상향조정 등 제도적 사항은 중국의 과세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대중국 투자계획을 재고하거나 추가확장계획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④ 낮은 납세의식에 따른 불성실 신고, 세원관리 미비 및 미비된 세무행정 등을 감안하면 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⑤ 증치세의 부분환급으로 인해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이를 계기로 중국내수시장 개척의 기회로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⑥ 2003년 10월의 수출환급률의 하향조정 조치([재세<2003>222호])로 인해서 수출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증치세 평균 환급률을 3% 포인

트 낮추는 것은 원가를 3%포인트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와 수출을 감소시키며, 수출 물량의 내수전환으로 인해 내수시장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이므로, 내수시장에 진출했거나 개척을 계획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⑦ 2003년 10월의 수출환급률의 하향조정 조치에 의해 품목별로 환급률이 다르게 하향조정되었지만, 첨단산업은 환급률의 변화가 없었다(우대조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한국기업은 비용우위 보다는 차별화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술, 브랜드 등에서 차별화 된 제품(고부가가치 제품)을 중국내에서 생산할 필요가 있으며, 내수시장도 동시에 공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국의 자연적인 여건 및 사회·경제적인 여건, 收費문제의 발생원인, 收費에 대한 정부의 각종 조치, 학계의 입장 그리고 收費에 대한 현재 단계에서의 인식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상당 기간 동안 收費는 내·외자기업 모두에 계속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대중 투자 시에 당초의 계획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생산활동 시에는 비용으로 처리됨에 따라 원가상승 요인이 되고 자금운용에 압박과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收費를 부과하는 중국 당국은 징수자의 입장이고, 부담하는 대중 투자기업은 납부자의 입장이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투자 준비 단계에서부터 收費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투자준비 단계에서 투자 예정 지역의 선정, 투자방식·형태의 결정, 합자·합작기업의 파트너 선정 등과 더불어 투자 예정 지역의 收費의 종류 및 실제 부담 정도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미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收費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원가에 반영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收費에 대해서는 省·자치구·직할시 정부 또는 중앙의 재정부 및 국가계획위원회에 심사 청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외자기업소득세의 세수가 최근에 들어와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요 세원의 하나로 성장함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조정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매년주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대상기업의 약30% 이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가격정보 및 관련기업간 업무왕래 조사자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 투자기업 특히 국내의 모기업(관련기업)과 거래를 하는 진출기업은 이전가격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고, 이전 가격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할 것이다. 관련기업간 거래가 독립기업간 거래조건과 부합하는지의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인에게 있으므로, 당해 기업은 관련기업간 업무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의 정당성 또는 합리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등 조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설화. “중국 회계제도의 변천과 개혁”. 경영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3.
- 고권석. 「중국회계해설」. 조세신보사, 2004.
- 고권석. 「중국 기업회계제도」. 조세신보사, 2005.
- 곤도요시오. 「중국 진출기업 100문 100답」. 매일경제신문사, 2004.
- 권태형. 「중국 조세와 회계제도」. 도서출판 시그마, 2003.
- 김희철·김애연. 「중국투자 가장 알고 싶은 궁금증 100문 100답」. 중앙경제평론사, 2004.
- 김정찬. “중국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학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98.
- 우 석. “중국의 WTO가입이 중국경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2001.
- 이동희. 「법인세절세전략」. 한국세무경영사, 1992.
- 이만수. 「중국에서의 기업경영」. 창림출판사, 2000.
- 이영우. 「세법개론」. 세경북스, 1997.
- 이은주.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주식제 전환에 관한 연구”. 경제학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02.
- 이일우. 「세법」. 박영사, 1995.
- 이형수. 「국제조세의 실무」. 행법사, 1997.
- 초지용. 「외상투자기업법 개론」. 수도권경제무역대학 출판사, 2000.
- 심사보. 「중국투자법률지침」. 법률출판사, 2000.
- 정상은.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특징 및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제53호, 2002. 2.
- 조상림·조 준. 「외상투자법률실무」. 중신출판사, 2002.

조현준. “중국의 외자기업 조세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3.

법제처. 「중국의 조세관련 제도」. 휘문인쇄, 2004.

한상국. “중국의 재정제도와 당면과제”. 한국조세연구원, 1997.

_____. “체제전환기의 중국 조세정책과 북한에의 시사점-남북경제통합 관련 조세 재정분야 기초연구(Ⅲ)”.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한국조세연구원.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 1995.

호경암. 「외상투자 최신법규 해답」. 기업관리출판사, 2002.

호형성. 「중국의상투자법 문제 연구」. 법률출판사, 2001.

【외국문헌】

伏見俊行·姜利·江心寧. 「最新中國稅制」. 日本經濟新聞社, 1997.

李海波. 「中國稅制」. 立信會, 1999.

中國稅制研究編. 「中國의 稅制」. 大藏財務協會, 2004.

賈繼鋒 等. 「加入WTO以後的新問題」.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0.

高培勇·溫來成. 「市場化進程中的中國財政運行機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1.

高培勇主編. 「費改稅:經濟學界如是說」. 經濟科學出版社, 1999.

郭慶旺. 「世界性稅制改革理論与實踐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1.

國家稅務總局 編. 「中國稅收知識問答」. 中國稅務出版社, 1996.

_____. 「中國稅制」. 中國稅務出版社, 2003.

國家統計局 編. 「中國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各 年度.

金人慶. 「中國當代稅收要論」. 人民出版社, 2002.

馬建堂·劉海泉. 「中國國有企業改革的回顧与展望」. 首都經濟大學出版社, 2000.

馬海濤. 「中國稅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1.

岳樹民. 「中國稅制優化的理論分析」.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3.

安體富. 「當前中國稅收政策研究」.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0.

- 安體富·楊文利·石恩祥. 「稅收負擔研究」. 中國財政經濟出版社, 1999.
- 余良軍·于建東 編. 「入世後 行業走勢及命運」. 經濟日報出版社, 2001.
- 劉佐. 「中國改革開放以來稅收制度的發展: 1978-2001」.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1.
- _____. 「中國稅制概覽」. 經濟科學出版社, 2004.
- _____. 「中國稅制50年」. 中國稅務出版社, 2000.
- 劉憲茹 主編. 「稅收徵管改革:理論與實踐」. 東北財經大學出版社, 2002.
- 張建華 主編. 「入世後再論中國面臨的緊要問題」. 經濟日報出版社, 2001.
- 財政部註冊會計師考試委員會辦公室編. 「稅法」. 經濟科學出版社, 2002.
- 財政部稅制委員會 編. 「大陸稅制研究」. 財政部稅制委員會, 1994.
- 丁芸·文伯安 主編. 「中國稅制」. 中國財政經濟出版社, 1995.
- 趙黎明 主編. 「經濟發展中的中國稅收研究」. 南開大學出版社, 2001.
- 中國稅收報告編 委員會. 「中國稅收報告2002-2003」.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3.
- 中國財政年鑑編輯 委員會. 「中國財政編輯」. 中國財政雜誌社, 各 年度.
- 陳穗紅. 「中國稅收政策理論與實踐」.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2.
- 黃衍電. 「中國稅制結構:明辨與抉擇」. 中國財政經濟出版社, 1999.
- 許建國. 「中國經濟發展中的稅收政策」. 中國財政經濟出版社, 1998.
- 財政部. 「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 1983., 「中外合資經營企業會計制度」. 1985.
- 財政部. 「企業財務通則」. 1992. 12. 6., 「企業會計準則」. 1992. 12. 7.
- 財政部.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財務管理規定」. 1992. 6.
- 財政部. 「外商投資企業執行企業財務通則」和「分行的企業財務制度有關問題的通知」.
1993.
- 財政部. 「關於印發外商投資企業執行新企業財務制度的補充規定的通知」. 1993.
-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的決定」.
1993. 10. 31.
-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 1993. 10. 31.
-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中華人民共和國稅收徵管理法」. 1992. 9. 4.

- 那力. “論外資企業避稅行爲及對策”. 長白論叢, 1994.
- 那成. “外商投資企業避稅手段及對策研究”. 天津社會科學, 1994. 6.
- 于穎. “淺析外資企業所得稅的優惠政策”. 財政與稅務, 1994. 5.
- 郭喜榮. “所得稅會計計算原理初探”. 會計研究, 1995. 11.
- 林鐘高. “所得稅是費用, 還時收益的分配”. 會計研究, 1995. 4.
- 國桂榮·徐曉陽. “所得稅會計問題初探”. 中國經濟問題 廈門大學, 1994. 5.
- 夏秀芬. “淺淡國際避稅與我國避稅的方式及異同”. 北方經貿, 1995. 1.
- 胡慶康. “關於理想稅制的基本原則”. 世界經濟文匯, 1995. 2.
- 于穎. “淺析外資企業所得稅的優惠政策”. 青海成經貿會計會, 對外經貿會, 1994. 12.
- 宋丙壽. “市場經濟與中國稅制模式的選擇”. 稅務與經濟, 1995. 5.
- 劉磊. “中國稅制改革的系統思考”. 經濟體制改革, 1995. 4.
- 張家坤. 「外商投資企業實務手冊」.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1993.
- 財政部工業交通司. 「外商投資企業 行新財務制度講解」. 北京: 中國商業出版社, 1994.
- 秦健 外1人. 「新稅制與會計處理百事通」. 北京: 中國經濟出版社, 1994.
- 張新民,劉鐘聲. 「中國會計熱點問題」.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96.
- 中國社會科學院工業經濟研究所. “中國工業發展報告”.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1996.
- 丁學東·李國中. 「中國企業財務改革」.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1996.
- 黃菊波. 「新中國企業財務管理發展史」.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1996.
- 劉李勝·劉俊亭. 「納稅, 避稅與反避稅」.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6.
- 張中秀. 「企業節稅劃策與案例」. 北京: 企業管理出版社, 1996.
- 徐榮才. 「所得稅會計」.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1996.
- 張中秀. 「納稅與節稅手冊」. 北京: 企業管理出版社, 1996.
- 中國稅務學會編. “中國稅務學會第三屆員代表大會即全國稅收理論研討會”. 北京: 中國稅務出版社, 1995.
- 王仲文. 「中國外商投資企業稅務」. 吉林省: 吉林技術科學出版社, 1994.
- 李浚. 「避稅與防范」.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1995.

- 于煒. 「外商投資業法律指南」.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 王文鈞. 「外商投資業財務管理」,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 張中秀. 「避稅与反避稅實務全書」, 北京: 中國經濟出版社, 1995.
- 王書瑤. 「1994年1月1日前後新旧稅制比較」, 北京: 改革出版社, 1993.
- 李海波. 新稅收与會計核算手冊」,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4.
- 余采. 「新編納稅与會計處理」, 北京: 中國審計出版社, 1995.
- 董大勝. 庄恩岳, 「新稅收制度与納稅會計」,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1994.
- 劉俊亭. 「中國稅法概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5.
- 張新民. 「稅務會計」, 北京: 中國審計出版社, 1995.